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구조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Enterprise as a Social Welfare Service Provider

J ÏhÅûÑhb hb7ÓhI•7hÅ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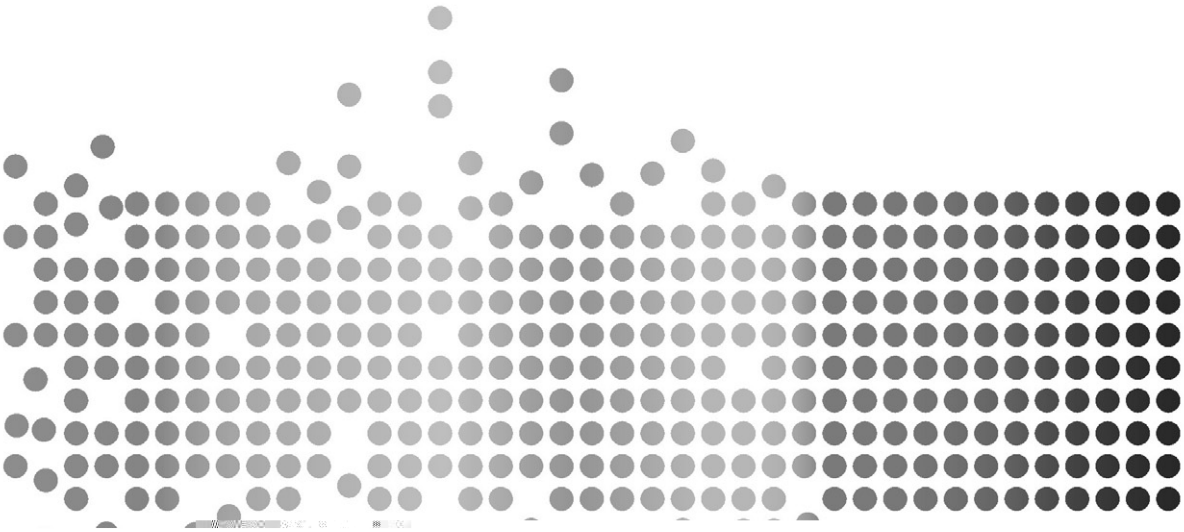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구조 연구

발 행 일 2011년 12월
저 자 강 혜 규 외
발 행 인 김 용 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 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예원기획
가 격 8,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978-89-8187-692-0 93330

머리말

,

.

2007 ,

.

.

,

3 (welfare mix)

. (human

servic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목 차

Contents

Abstract ····· 1

요 약 ····· 3

Ⅰ. **서 론** ····· 13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8

Ⅱ. **이론적 검토 및 제도 현황** ····· 25

1. 사회적기업의 정의 및 특성 ····· 25

2. 사회적기업 관련 연구 경향 ····· 30

3.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지원제도 ····· 32

Ⅲ. **유럽 국가의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및 시사점** ····· 47

1. 유럽국가에서의 사회적기업 개념 ····· 48

2.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법적 형태 ····· 50

3. 사회(사업)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정지원의 현황 ····· 52

4. 사회적기업의 전개 과정 ····· 62

5. 사회적기업의 지원 및 육성책 ····· 67

6. 소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주체로서의 위상 및 가능성 ····· 70

Ⅳ.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운영 사례** ····· 75
1. 사례 조사의 개요 ····· 75
2. 사례 A: 아동복지서비스 기업(사회복지법인) ····· 77
3. 사례 B: 아동복지서비스 기업(주식회사) ····· 85
4. 사례 C: 장애인서비스 기업(비영리법인) ····· 97
5. 사례 D: 장애아동서비스 기업(비영리법인) ····· 106
6. 사례 E: 의료서비스(생활협동조합) ····· 119
7. 사례 F: 노인서비스 기업(비영리법인) ····· 129
8. 사례 G: 노인서비스 기업(사회복지법인) ····· 139
9. 사례 H: 종합돌봄서비스 기업(상법상 주식회사) ····· 147
10. 사례 I: 노인 및 장애인 서비스 기업(상법상 주식회사) ····· 161

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실태 분석** ····· 175
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 175
2. 사회적기업 사례조사 결과 및 시사점 ····· 181

Ⅵ.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의 개선 과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업을 중심으로** ····· 257
1.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의 특성과 문제점 ····· 257
2.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 사회적기업의 전망 ····· 263
3.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과제 ····· 269
4.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현실과 세부 과제 ····· 276

참고문헌 ····· 289

Contents

표 목차

〈표 2-2-1〉 사회적기업 사례 조사 내용 ·····20
〈표 2-3-1〉 유형별 사회적기업 현황(2010년 기준) ·····35
〈표 2-3-2〉 사회적기업의 연도별 재정구조 ·····36
〈표 2-3-3〉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및 2010년 실적 ·····38
〈표 2-3-4〉 사회적기업 단계별 경영컨설팅 내용 ·····39
〈표 3-3-1〉 유럽 사회적기업의 사례 ·····53
〈표 3-3-2〉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한 유럽의 시민사회 활동영역의 비중 56
〈표 3-3-3〉 유럽국가 사회서비스 영역의 복지혼합 상황 ·····57
〈표 3-3-4〉 유럽 시민사회(civil society)영역의 인력 현황 ·····58
〈표 3-3-5〉 유럽국가 시민사회(civil society) 부문의 자금조달 60
〈표 3-3-6〉 사회(사업)복지서비스 영역에서 비영리 부문의 재정지원 시스템 구성 비율 ·····61
〈표 3-4-1〉 유럽국가 고실업의 만성화(실업률 대비) ·····64
〈표 3-4-2〉 사회서비스 제공과 국가재정지원 정도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모델 ·····66
〈표 3-5-1〉 유럽 국가별 사회적기업 지원방안의 예 ·····67
〈표 4-1-1〉 사례조사 대상 사회적기업의 개요 ·····76
〈표 5-1-1〉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별 분포 176
〈표 5-1-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지역 분포 ·····177
〈표 5-1-3〉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설립연도별 분포 177
〈표 5-1-4〉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인증연도 기준 사업운영기간 현황 ·····177

〈표 5-1-5〉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인증이전 사업유형 ·····178
〈표 5-1-6〉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운영의 독립성 ·····179
〈표 5-1-7〉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조사대상 제공 서비스 180
〈표 5-2-1〉 조사대상 기업의 일반현황 ·····182
〈표 5-2-2〉 조사대상 기업의 수입 및 지출구조 ·····183
〈표 5-2-3〉 조사대상 기업의 인증 이전 형태 ·····185
〈표 5-2-4〉 조사대상 기업의 인증 이전 사업경험 ·····186
〈표 5-2-5〉 조사대상 기업의 인증 계기 ·····187
〈표 5-2-6〉 조사대상 기업의 인증 시 주로 기대한 점 ·····188
〈표 5-2-7〉 조사대상 기업의 인증 이전 준비과정 지원 주체 및 내용 190
〈표 5-2-8〉 조사대상 기업의 인증과정 지원 주체 및 내용 ·····191
〈표 5-2-9〉 조사대상 기업의 운영과정 지원 주체 및 내용 ·····192
〈표 5-2-10〉 조사대상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관련 사항 ···194
〈표 5-2-11〉 조사대상 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사항 ·····195
〈표 5-2-12〉 조사대상 기업의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관련 사항 ···197
〈표 5-2-13〉 조사대상 기업의 법인세 감면 관련 사항 ·····199
〈표 5-2-14〉 조사대상 기업의 경영컨설팅 관련 사항 ·····202
〈표 5-2-15〉 사회적기업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205
〈표 5-2-16〉 사회적기업 인증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207
〈표 5-2-17〉 사회적기업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209
〈표 5-2-18〉 사회적기업 인증이후 고용인력 수의 변화 ·····212
〈표 5-2-19〉 사회적기업 인증이후 업종 및 복지서비스 유형의 변화 213
〈표 5-2-20〉 사회적기업 인증이후 이용자 수의 변화 ·····214
〈표 5-2-21〉 사회적기업 인증이후 서비스 양의 변화 ·····215

Contents

〈표 5-2-22〉 사회적기업 인증이후 서비스 품질의 변화 ·····215
〈표 5-2-23〉 사회적기업 인증이후 정부기관과의 관계 변화 ·····216
〈표 5-2-24〉 사회적기업 인증이후 홍보 및 지역사회자원 동원 변화 217
〈표 5-2-25〉 사업 운영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이점 ·····219
〈표 5-2-26〉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이점 ·····220
〈표 5-2-27〉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차별화 ·····222
〈표 5-2-28〉 사회적기업 직원의 자부심 체감도 ·····229
〈표 5-2-29〉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 과정 유형 ·····231
〈표 5-2-30〉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 운영 여부 ·····233
〈표 5-2-31〉 의사결정구조의 구성 ·····234
〈표 5-2-32〉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지역주민의 참여 방식 234
〈표 5-2-33〉 사회적기업 내 회의 빈도별 주요 안건 ·····235
〈표 5-2-34〉 일반 사회복지기관과의 차별성 있는 의사결정의 실현 방법 237
〈표 5-2-35〉 수익 변화 형태에 따른 증감 비교 ·····241
〈표 5-2-36〉 수익 규모에 따른 수익 비교(2010년 기준) ·····242
〈표 5-2-37〉 수익의 운용 및 재투자 내역 ·····243
〈표 6-1-1〉 사회적기업의 인증 조건 ·····259
〈표 6-1-2〉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지원정책 내용 ·····260
〈표 6-1-3〉 최근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261

그림 목차

〔그림 1-1-1〕 (예비)사회적기업 수 증가 추이 ·····14
〔그림 2-3-1〕 사회적기업의 인증시기별 전체 유급근로자 수 ·····34
〔그림 3-1-1〕 유럽 사회적기업의 범주 ·····49
〔그림 6-2-1〕 유럽 4개국의 복지혼합(노인돌봄영역을 중심으로) 267
〔그림 6-2-2〕 사회적기업과 복지체제의 삼각구도 ·····269
〔그림 6-3-1〕 한국의 사회서비스체제 변화전망 ·····271

Abstract

A Study on the Social Enterprise as a Social Welfare Service Provider

Social welfare service sector in South Korea, particularly social services supply regions are facing rapid change. Since 2007, the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 is being enforced, long-tern care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and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is also being enforced from the end of 2007. In particular, social enterprise is being expected as a scheme that makes an employment creation and activates social services.

This study focused on determining how social enterprise providing social welfare services is being operated during progressing qualitative research. First of all, social enterprise is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social services in the broad sense, but is becoming increasingly diverse according to the type and category of service and required operating condition is discriminative. Therefore, this tried to review that whether social enterprise can strengthen their native forces as a social welfare service supplier and how is possible. Secondly, it tried to make it clear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operating reality of the social enterprise which discussed and regulated by

institutionally and academically. This is a review for the effectiveness of social welfare system due to the consideration of presence of the gap provided by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servicing companies. Thirdly, it reviewed that whether social enterprise has the continuous enabled operation structure as the social welfare services supplier and what are needs for improvement. Finally, stabilization of operation, adequacy of supporting metho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employment stability are mainly considered to find alternatives.

요 약

1. 연구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주요 연구 결과

□

○

.

○

, ,

.

○

, ,

, .

□

○

,

.

○

—

(provider) .

•

.

• 80 ( )

.

• ,

.

— ( ) (producer)

.

•

.

• ,

.

•

‘ ’

.

□

○ .

— ,

.

— ,

.

— ,

.

— ,

.

○

(welfare mix)

.

—

.

—

, .

○ , , ,

.

—

(co-produc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

서론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00

,

.

,

,

.

,

2007 12

.

‘

,

,

.

,

,

‘

, ,

.

.

, , ‘

,

,

, . .

, (, 2011).

2011 11 600 ,

2007 50 . 2007

396 , 2011 11 1,291 .

15,416 ,

9,429 (61.2%) . “

,

. ,

”

(, , 2011. 12).

〔그림 1-1-1〕 (예비)사회적기업 수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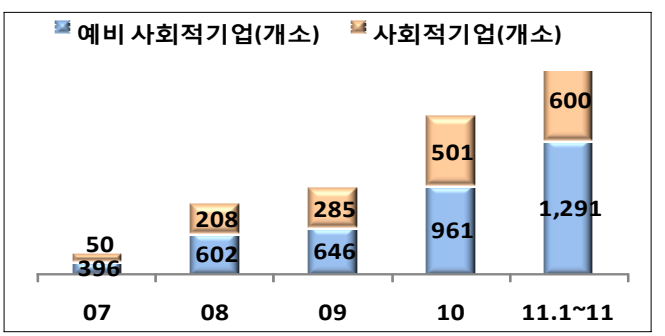

: , , 2011. 12

2007 10 2010 12 14
501 (1,058 , 514 , · 13
48.5%) . 501
(284),
(46), (93), (78) ,
(204), (125), (99
), (58), (12), (3)
.

, , , ,
, · · · , , ( ), · ,
9 , (160 , 31.9%), (90 , 18.0%),
(80 , 16.0%), (64 , 12.8%), · (50 , 10.0%),
(26 , 5.2%), (22 , 4.4%), (9 , 1.8%) ,
, ,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

3 (the third sector) (welfare mix)

. ,

, 3

.

.

,

.

,

.

,

.

, , , ,

,

.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연구 방법

,

.

,

2 , .

, .

10 .

.

. 21

. ,

.

〈표 2-2-1〉 사회적기업 사례 조사 내용

영역	세부 문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65 , ,) - ,

02

이론적 검토 및 제도 현황

II. 이론적 검토 및 제도 현황

1. 사회적기업의 정의 및 특성

가. 외국의 사회적기업 정의

,

.

,

,

.

.

,

.

1970 .

,

,

(, 2008). ,

,

. 1970

,

.

,

.

,

(, 2008).

‘

’ ‘ ’ 1990

(,

2010). Borzga(2001)

, .

Defourney(2006)

,

15 EMES ‘

’ (, 2010).

(2008) , EMES

. . .

.

EMES ‘ ’

, , ,

‘

.

, ,

, , ,

(, 2008).

,

.

(, 2006).

,

,

(, 2009). ,

,

(Kerlin, 2006; , 2010).

나.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기업 정의

.

[1], 2007

.

,

(· , 2003;

· , 2005). (2006)

,

,

. (2008)

1) ,

. , .

. (2004)

.

, (2004) 90

,

. .

(, 2010

).

.

(2004)

.

, NGO,

.

다. 사회적기업의 특성[2)]

1)

.

2) (2009), 「 」 , .

.

,

.

.

, , 3

. ‘ ,

.

2)

. ,

,

, , ,

.

(hybrid character) (, 2009).

.

3) :

. , , , ,

.

,

.

3 , ,

, (, 2009).

2. 사회적기업 관련 연구 경향

2004 ,

, , ,

.

.

,

(, 2010; , 2010),

(, 2008) .

,

(, 2010; , 2009), 1

(, 2008) .

(, 2008; , 2010),

. , .

DEA

(, 2010), SROI

(, 2010) .

,

.

. ,

,

(, 2010; , 2009; , 2009;

, 2008) .

(, 2010),

(, 2010; , 2010; , 2009).

.

(, 2010; , 2008; , 2008) ,

(, 2009) .

,

, , , ,

,

(,

2010; , 2010; , 2010).

.

(, 2009) ,

(, 2009) .

,

, , .

, ,

, ,

.

,

,

. ,

.

3.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지원제도

가.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2007 2010 12
1,062 (2007 166 , 2008
285 , 2009 204 , 2010 407) ,

999 ,
, 514
(51.5%).

, , 13

501 (501).

1)

501

. 501 , · ·

235 47%

. ,

· (66 , 13.2%), · · (61 , 12.2%), ·

(51 , 10.2%), · (46 , 9.2%), (31 ,

6.2%), (11 , 2.2%) .

2)

2007 ~2010 (

) 12,146 , 24.2 .

2007 1

(101 9 5

2007 ; , 2010). 2008 4 10

27

, 2010 3, 4 , 10 19 , 30

, 11 30 28 , 55

(, 2010).

〔그림 2-3-1〕 사회적기업의 인증시기별 전체 유급근로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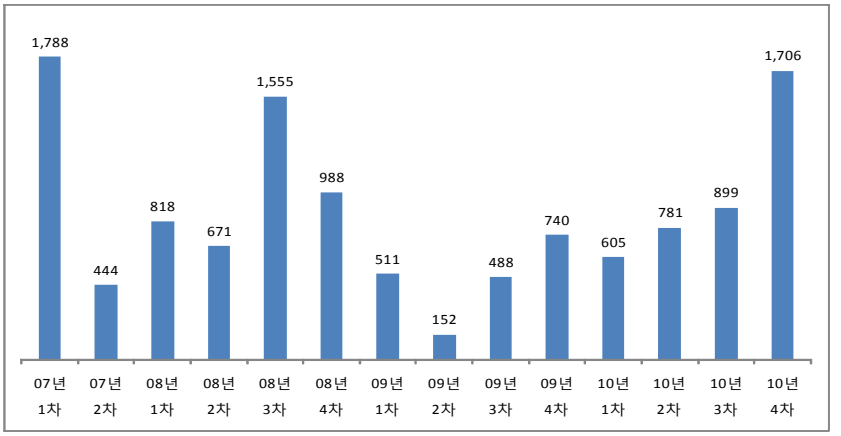

: 501

3)

4 .

, 30%

2010 193 .

, , , .

,

‘ ’, (

) . ‘ ’,

‘ ’ .

,

30% 2010

45 . 16 (36%)

, . (29%), (9%), (9%)

.

‘ ’,

‘ ’ .

,

20% ,

2010 116 . 32 (27%)

· (26%),

(24%), (9%), (5%) .

‘ ’

‘ ’,

‘ ’ .

,

, 2010 147 . · · ·

55 (37%) , (27%), (18%),

(9%) . ‘ ’,

‘ ’

‘ ’, ‘ ’ .

2011 ,

.

20% .

〈표 2-3-1〉 유형별 사회적기업 현황(2010년 기준)

(: , %)

유형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합계
기업 수	193 (38)	45 (9)	116 (23)	147 (30)	501 (100)

: 501.

4) **3)**

(2010)

, , . 3

, ,

. 〈 2-3-2〉 ,

.

. ,

.

4)

〈표 2-3-2〉 사회적기업의 연도별 재정구조

(:)

	2007			2008			2009		
	자산 (n=108)	부채 (n=107)	자본 (n=107)	자산 (n=201)	부채 (n=201)	자본 (n=201)	자산 (n=254)	부채 (n=250)	자본 (n=253)
총액	59,391.5	31,244.9	27,998.6	121,911.2	63,026.8	56,918.9	153,109.2	76,768.1	74,493.4
평균	560.3	297.6	266.7	549.1	285.2	258.7	602.8	307.1	294.4
중위수	239.6	92.2	64.1	166.3	93.7	49.7	217.0	116.7	73.2
최소값	0.0	0.0	-577.9	2.4	0.0	-1020.4	7.0	0.0	-412.2
최대값	4.875.6	1,830.3	4,749.2	12,943.4	3,879.8	10,992.9	16,184.2	4,101.8	13,681.9

: (2010), 3

3) (2010), 『 3 』 . .

4) (2010) ,

,

.

나.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1)

2007 7 1

2) [5]

〈 2-3-3〉

5) (http://www.socialenterprise.or.kr)

〈표 2-3-3〉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및 2010년 실적

지원 유형	주요 내용	2010년 실적
경영지원	• ( ) · · ·	• 6 (219), (179 , 188)
시설비 등 지원	• · · ·	• 52 , 50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	• 172
세제지원	• · 4 • ( ) ( ) 10%	
재정지원	• · • ,	• (859 , 2010)· (8.5%) • : , , (150)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적기업가 양성 지원	• · · •	• , 3 , 6 • 18 , 545

( )

( )

“ ” . “ ” ( )
, , 3
.
2011
,
.
. ,
.
,
,
. .
.
300
, 300 ~1,000
10%, 300 ~2,000
20% .

〈표 2-3-4〉 사회적기업 단계별 경영컨설팅 내용

창업단계	성장단계	자립단계
( )		
·	(, ,)	(· · , ,)
-		

( )

(1)

. . .

,

.

4 (2011 98
), 1
90%, 2 80%, 3 70% .

.

14 1 ( )
,
. , , ,
, , 3
.
, 300
, ,
2
(2011). 3 (,
50 2), 150
,
10%(1),
30%(2), 50%(3) .

(2)

( ),

R&D, , ,

. ,

, 7 , 3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4)

85 6 4

50% ,

3

50%

.

,

.

10%, 30% .

(5) (4)

2010

. 13 2

.

,

4

,

.

,

4 .

( )

(1) (Pro Bono)[6]

,

6) (Pro Bono) ‘ pro bono publico: for the public good’ (

) .

(Pro Bono) . ,

, , ,

. , , , , IT

.

(2)

,

,

. ,

,

. ( ) , ,

3 ,

, .

.

(3)

12

.

,

,

.

( )

03

유럽 국가의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및 시사점

III. 유럽 국가의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및 시사점

2000

( )

( )

. 2007

.

.

. ,

(

) . ,

,

. ,

.

( )

.

1. 유럽국가에서의 사회적기업 개념

.

‘ ’

.

‘ ’

.

. . (近隣)

.

3 .

.

(social economy) 19

.

. , ,

( ), , ,

.

. . .

(social enterprise)

. 1980

,

‘ (social entrepreneurs)’

(, 2008).

‘ ’, ‘ ’, ‘ ’

.

‘ ’

1996 2000 15 European Research Network EMES(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Europa)

. EMES 15

, 1)

, 2) , 3)

, 4) , 5)

, 6) , 7) , 8)

, 9)

(Defourny, 2001).

.

.

(Defourny, 2001).

〔그림 3-1-1〕 유럽 사회적기업의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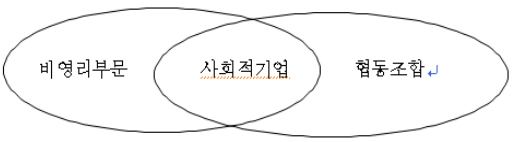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

.

,

(, 2010).

2.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법적 형태

, ,

. EMES

,

.

, . 70

.

.

, . 80

. 100

.

, ,

.

, ,

, .

,

.

, ( ) .

90

. , , ,

.

. , 1) , 2)

, 3) , 4) . ,

(association) . , ,

.[7] , .

,

.

.

.

,

7) .

.

.

.

(community interest company), ‘

(gGmbH: work integration company for community interest)’ .

.[8] , .

, , ,

. ,

.

.

3. 사회(사업)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정지원의 현황

가. 사회적기업의 주요 활동영역

EMES 15

.

( ) ,

,

8) 1938

, .

5 (

543-613).

.[9]

. , ( ),

(, 2008).

〈표 3-3-1〉 유럽 사회적기업의 사례

분야	국가	사례
개인서비스	오스트리아	(Children's Groups): (Childcare)
	프랑스	: (, ACCEP)
	덴마크	(social residences): .
	영국	(Home Care) ,
	스웨덴	(FKU):
	이탈리아	A : , 1991
	포르투갈	(1985)
노동을 통한 훈련·통합	벨기에	OJT .
	이탈리아	B : (1991)
	독일	, , , . ( )
	룩셈부르크	, , , ( ). .
	스페인	.

9) EMES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WISE) .

.

분야	국가	사례
		“ ” (transitional employment)
지역 개발	핀란드	9 (Cooperative Development Agencies) , ,
	네덜란드	“ (neighbourhood management enterprises)": (proximity service) , .
	그리스	(farm tourism cooperative): , , ,
	아일랜드	(social housing), (work integration), (credit union),

나. 사회(사업)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 ) .

( )

. ( )

.

〈 3-3-2〉 1995 2000

.

10%

30% .

.

, , ,

15%

, , ,

20%~30% .

, 3

.

〈표 3-3-2〉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한 유럽의 시민사회(civil society) 활동영역의 비중 (1995-2000)

(: %,)

	문화	교육	의료	사회 서비스	환경	지역개발	권익옹호	재단	국제	전문	n.e.c.	전체 (천명)
벨기에	11.1	30.5	23.9	22.9	0.5	8.3	0.5	0.3	0.4	1.5	0.0	456.9
체코	35.8	10.6	11.9	13.1	6.1	6.7	3.5	2.2	1.4	8.6	0.0	115.1
핀란드	32.6	12.4	13.1	15.5	0.7	1.6	16.8	0.2	0.4	6.2	0.4	137.6
프랑스	30.0	14.6	9.2	27.4	5.0	4.7	1.9	0.6	2.4	4.3	0.0	1,981.5
독일	19.7	7.6	21.8	27.2	2.8	4.4	3.3	1.0	1.6	4.2	6.4	2,148.9
헝가리	36.8	8.9	4.7	15.1	2.2	11.3	2.3	3.7	1.0	14.0	0.0	54.8
아일랜드	10.5	43.0	23.3	13.0	0.9	5.7	0.5	0.7	0.47	1.7	0.3	150.3
이탈리아	23.9	14.8	18.0	26.1	1.2	3.6	3.0	0.8	0.6	6.7	1.2	950.1
네덜란드	17.2	23.1	29.5	20.3	2.0	1.7	2.9	0.2	1.2	1.8	0.0	1,051.8
노르웨이	41.2	11.2	6.0	14.0	0.6	4.3	6.3	0.2	2.9	13.1	0.3	163.0
폴란드	32.7	22.2	6.7	19.5	1.7	1.0	1.0	0.4	1.0	10.8	3.0	154.6
루마니아	28.6	15.1	8.5	32.2	2.2	2.4	3.8	1.0	4.0	2.4	0.0	83.9
슬로바키아	37.0	20.4	1.9	10.1	9.0	1.1	3.8	5.6	0.9	9.1	1.1	23.0
스페인	15.2	20.6	10.5	30.8	3.0	9.2	5.9	0.1	2.6	1.8	0.2	728.8
스웨덴	45.5	6.8	0.9	10.5	2.1	4.4	10.2	0.2	2.3	15.4	1.7	342.9
영국	27.5	25.4	8.0	16.0	2.4	12.5	1.8	1.3	2.4	1.5	1.2	2,536.0

: 36 17 ( ).
: Lester (2004)

〈 3-3-3〉 , , ,

( ) , ,

(%) .

, ,

( ) .

90% ,

40% .

, .

,

3

.

〈표 3-3-3〉 유럽국가 사회서비스 영역의 복지혼합 상황

(: %)

		공공부문	민간영리부문	비영리부문
스웨덴1) (정부주도모델)	병원침상	92.1	-	7.9
	노인요양시설[2]	96.9	-	3.1
	보육시설(주간보호)[3]	92.0	0.3	7.6
독일2) (조합주의모델)	병원침상	55.0	7.0	38.0
	노인요양시설	18.0	20.0	62.0
	보육시설(주간보호)	59.0	-	41.0
영국3) (자유주의모델)	노인요양시설	40.0	46.0	14.0
	보육시설(주간보호)	18.0	49.0	33.0
	제3섹터의 자금조달	39.0	30.0	31.0
이탈리아4) (제3섹터주도모델)	노인/장애인 재가보호	19.0	-	81.0
	사회서비스 제공	15.4	-	84.6

: 1) 1998 , 1998 , 1990 , 1993
2) 2001 , 7.8%( ), 12.4%( )
3) 2007 80%
: (2010)

다. 인력 및 재정지원의 현황

, , ,

.

, .

〈 3-3-4〉

.

〈표 3-3-4〉 유럽 시민사회(civil society)영역의 인력 현황

(: %)

	피고용인	자원봉사자	전체
오스트리아	3.84	1.07	4.92
벨기에	8.62	2.32	10.93
체코	1.32	0.72	2.04
핀란드	2.42	2.77	5.25
프랑스	3.70	3.75	7.55
독일	3.54	2.33	5.89
헝가리	0.94	0.21	1.15
아일랜드	8.28	2.15	10.42
이탈리아	2.26	1.49	3.76
네덜란드	9.21	5.07	14.40
노르웨이	2.69	4.35	7.20
폴란드	0.64	0.17	0.80
루마니아	0.35	0.44	0.79
슬로바키아	0.57	0.24	0.82
스페인	2.82	1.48	4.31
스웨덴	1.74	5.11	7.10
영국	4.84	3.63	8.54

: 36 17 , 1995-2000 .
: Lester (2004)

.

.

〈 3-3-4〉 , , ,

, , , , ( )

, , ,

7% .

2.5% .

7.1%

5.1%

.

14.4% 9.2%

. , , ,

, , ,

,

.

.10)

〈 3-3-5〉

.

. , (64.3%),

(50.4%), (59.0%)

10) .

(1995-2000,)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1,380.4	4,197.7	196.4	2,657.5	41,929.6	48,433.0	49.7	715.6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8,290.7	16,991.6	4,255.8	150.8	155.0	7,055.1	10,206.1	21,976.2

〈표 3-3-5〉 유럽국가 시민사회(civil society) 부문의 자금조달 (1995-2000)

(: %,)

	정부	기부	이용료	US달러	정부	기부	이용료	US달러
	물적 지원만 고려할 경우				인적, 물적 지원을 모두 고려할 경우			
오스트리아	50.4	6.1	43.5	6,262	41.3	23.1	35.6	7,643
벨기에	76.8	4.7	18.6	25,576	65.9	18.1	16.0	29,773
체코	39.4	14.0	46.6	860	32.1	30.0	37.9	1,056
핀란드	36.2	5.9	57.9	6,064	25.2	34.6	40.3	8,722
프랑스	57.8	7.5	34.6	57,304	33.4	46.6	20.0	99,234
독일	64.3	3.4	32.3	94,454	42.5	36.2	21.3	142,887
헝가리	27.1	18.4	54.6	1,433	26.2	21.1	52.7	1,483
아일랜드	77.2	7.0	15.8	5,017	67.6	18.6	13.8	5,732
이탈리아	36.6	2.8	60.6	39,356	30.2	19.7	50.1	47,647
네덜란드	59.0	2.4	38.6	60,399	46.1	23.9	30.1	77,391
노르웨이	35.0	6.9	58.1	5,640	20.0	46.9	33.1	9,895
폴란드	24.1	15.5	60.4	2,620	22.8	20.1	57.1	2,771
루마니아	45.0	26.5	28.5	130	20.5	66.5	13.0	285
슬로바키아	21.9	23.3	54.9	295	21.3	25.1	53.1	302
스페인	32.1	18.8	49.0	25,778	25.2	36.3	38.5	32,833
스웨덴	28.7	9.1	62.3	10,599	14.6	53.7	31.7	20,805
영국	46.7	8.8	44.6	78,220	36.4	28.8	34.8	100,196

: 36 17 .
: Lester (2004)

〈 3-3-5〉

.

(, 42.5%,
, 41.3%, , 46.1%). , (28.7%),

(35.0%), (36.2%)

(62.3%,

58.1%, 57.9%) .

(3-3-2)[11].

14.6%, 20.0%,

25.2% .

( )

(3 ,)

, , .

〈 3-3-6〉 ( )

,

70% . 65%,

57% .

31% ,

0.7% .

〈표 3-3-6〉 사회(사업)복지서비스 영역에서 비영리 부문의 재정지원 시스템 구성 비율

(: %)

	스웨덴	독일	영국	이탈리아
공공부문	70.0	65.0	39.0	57.0
민간비영리부문(시장)	20.0	30.0	30.0	36.0
비영리부문	10.0	5.0	31.0	0.7

: 1) , ,
2) 1998 , 1998 , 1990 , 1993
: (2010)

11) ( )
. ( )
(3-3-6)

4. 사회적기업의 전개 과정

가. 사회경제조직 발달의 역사적, 이념적 맥락

,

.

, .

. (2008)

.

, 19

.

. ‘ (associationniste socialism)’, ‘ (subsidiarity)’ ‘ (christian solidarism)’, ‘ (solidarism)’ ‘ (liberalism)’

.

,

19 20

. 19

,

.

‘ (social market economy)’ .

.

, .

1970

. 1981 ‘

’

, ,

.

,

.

.

’

, , ,

.

나. 사회적기업 육성의 정치적 맥락

1)

1980

.

12 1979 20%

1980 50% . 70

25% 90 40% .

70 30% 12

90 40% . 80

90 30% .

〈표 3-4-1〉 유럽국가 고실업의 만성화(실업률 대비)

(: %)

	1979		1989		1999		2006	
	A	B	A	B	A	B	A	B
프랑스	55.1	30.3	63.7	43.9	55.6	40.4	62.6	44.0
독일[2)]	39.9	19.9	66.7	49.0	67.2	51.7	73.1	57.2
스웨덴	19.6	6.8	18.4	6.5	45.2	30.1	27.8	14.2
영국	39.7	24.5	57.2	40.8	45.4	29.6	40.9	22.1
미국	8.8	4.2	9.9	5.7	12.3	6.8	17.6	10.0

: 1) A 6 , B 12
2) 1979 1989 , 1999 2006
: OECD Employment Outlook, 1983, 1992, 2002, 2007, Susie Park(2008)

80 .

.

. ,

.

. 80, 90

.

EU

(activation policy)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scoli Ranci(2002) 3

, 1) ‘ ’,

, 2) ‘ ’,

3

, 3) ‘ 3 ’,

, 4) ‘ ’,

.

〈표 3-4-2〉 사회서비스 제공과 국가재정지원 정도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모델

		정부의 재정지원 정도	
		주도적(60%이상)	부분적(60%이하)
제3섹터의 사회서비스 공급 비중	주도적 (50%이상)	보조적 모델 (subsidiarity model) 예) 독일	제3섹터 지배적 모델 (third-sector dominant model) 예) 이탈리아, 영국(보육)
	보완적 (50%이하)	정부주도적 모델 (state dominant model) 예) 노르웨이	시장주도적 모델 (market dominant model) 예) 영국(주거보호) 미국(주거보호)

: Ascoli & Ranci(2002)

5. 사회적기업의 지원 및 육성책

.

.

.

,

.

‘ ’ 2008 31

.

〈 3-5-1〉 31

.

〈표 3-5-1〉 유럽 국가별 사회적기업 지원방안의 예

국가	지원방안
오스트리아	( ), ( ), ( )
벨기에	( ), ( ), ( ), ( )
불가리아	( ), ( ) ( )
키프로스	( ), ( ), ( ), ( ), ( )
체코	( )
덴마크	( ), ( )
에스토니아	( ), ( )

국가	지원방안
핀란드	( ), ( ), ( )
프랑스	‘ ’ ( ), ‘ ’ ( ), ( ), ( )
독일	( ), ( ), ( )
그리스	(EQUAL), ‘ ’(EQUAL), Soc-Eco(EQUAL), ( )(EQUAL)
헝가리	( ), ( ), ( )
아이슬란드	( )
아일랜드	( ), ( )
이탈리아	( ), ( )
라트비아	( ), ( )
리히텐슈타인	, , ( )
리투아니아	(EQUAL), ( )
룩셈부르크	National Service of Social Action( )
몰타	( ), VAT ( )
노르웨이	( ), ( )
폴란드	( ), ( )
포루투갈	( ), ( ), ( )
루마니아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슬로베니아	( ), ( )
스페인	( ), ( ), (www. solucionesong. org)(

국가	지원방안
	)
스웨덴	Samhall( ) ( ), ( )
네덜란드	Taste the meeting( )(EQUAL), ( ), (EQUAL)
터키	- ( ), No.5253( )
영국	( ), ( ), ( ), (EQUAL)

: (2010), (2008)

〈 3-5-1〉 5

.

, (21):

.

.

, (26):

. EU 15

.

.

, (13):

.

, ,

.

.

.

, (8):

.

.

, EQUAL (8): EQUAL

(European Social Fund) ,

, , ,

, 5

.

.

,

‘ (social Enterprise unit)’, ‘

’, ‘ ’ .

6. 소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주체로서의 위상 및 가능성

.

. ( )

.

, ( ) (provider)

.

. 80

( )

.

, ,

.

,

.

( )

.

( )

(producer) .

( )

. , ,

.

,

. ( )

,

.

‘ ’

.

04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운영 사례

Ⅳ.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운영 사례

1. 사례 조사의 개요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7

2009

. 2 , 3 ,

3 , 1 , 6

, 3 .

〈표 4-1-1〉 사례조사 대상 사회적기업의 개요

	업체명	조직형태	기업유형	인증연도	종사자 규모
사례 A	○○			2008	4
사례 B	○○○○			2008	85
사례 C	○○			2008	33
사례 D	○○			2007	30
사례 E	○○			2008	62
사례 F	○○			2009	21
사례 G	○○○○			2009	70~80
사례 H	㈜○○			2009	51
사례 I	㈜○○			2009	280

2. 사례 A: 아동복지서비스 기업(사회복지법인)

- ❑ 주요 사업 내용: 아동지도사파견사업, 공부방을 직접 설치하여 취약계층 여성들을 아동지도사로 파견
- ❑ 운영주체의 특성: 사회복지법인(종합사회복지관 소속)
- ❑ 사회적기업 유형: 일자리제공형
- ❑ 대상지역 범위: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며, 이 중 2개 구가 주요 대상임.
- ❑ 이용자 규모: 약 40명
- ❑ 종사인력 규모: 4명

가. 사회적기업 인증 이전 사업

○○ ○○

2005

, 2008 .

“

.

.”

○○

, .

.

“ . 2005

. 3

, ,

.

,

.”

나. 사회적기업 인증과정에서의 정부지원

,

. , 5

, (2010 7),

2 ,

.

,

. “

,

, .”

1 , 2

.

.

“○○ 2 , 1

, 2 ○○

, .

.”

.

다. 사회적기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

.

“

, ,

.

200~300 ,

.”

라. 사회적기업 인증이후 변화

20 . 2010

. “2008 2009

,

.” 2 4

, .

.

. “ 2005

. 2009

.”

.

’

“ ’

”

’ “

. ○○

’

”

.

마. 사회복지서비스제공의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이점

.

“

’

’

”

.

’

.

“

,

.”

바. 기업의 운영

1)

,

. 1

, 1 , 1 , 1 , 1

,

.

.

2)

7 ,

. 9

.

.

“

, ,

.”

60% ,

70~80% .

, 2008

.

, 1,700 .

3)

“

”

, .

,

.

4) ·

,

.

,

.

, “

,

. 1 ○○

.”

사. 사회적기업 경영에 있어 애로사항

.

“2009

.

, .

."

○○ ○○ 25 , ○○

15 40 . ,

50% ,

25% 10% .

.

“

,

."

.

아. 사회적기업의 강점

,

,

30~40

.

자.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 “ ,

차. 사회적기업 전망에 대한 견해

○○

2012

3. 사례 B: 아동복지서비스 기업(주식회사)

- ❑ 주요 사업 내용: 가정방문 보육서비스, 엄마가 출근할 때의 빈자리를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는 영유아 중심 서비스
- ❑ 운영주체의 특성: 주식회사(상법상 회사)
- ❑ 사회적기업 유형: 일자리제공형
- ❑ 대상지역 범위: 광역시 전체
- ❑ 이용자 규모: 월평균 100여명
- ❑ 종사인력 규모: 85명 (사회적일자리 50명, 일반 35명)

가. 사회적기업 인증 이전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2008 .

“

.

, ,

.”

나. 사회적기업 인증과정에서의 정부지원

,

,

. 5 (

) 3

. 2010

, 2010 , 4

.

,

.

“ ,

.

” . “

. 4 ,

,

.”

, “

, 3~4

2

”

,

.

,

.

”

.

다. 사회적기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

. “ .

”

.

.

“

.

”

.

,

.

“ ,

.

. .”

라. 사회적기업 인증이후 변화

“

, . .

”

.

,

,

.

“ 100 ,

.

50

, 14 35 .

50 50 ,

50 .”

(5),

.

,

.

, .

“ ,

100

”

.

“

.

2 2

. 74 ,

.

,

.”

, .

“

.

.

,

”

.

마. 사회복지서비스제공의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이점

, ,

.

“

? ? ” .

, “

?” ,

.

○○

.

, .

“ . 5

,

.

.”

바. 기업의 운영

1)

. ,

.

, .

,

, “

,

”

, .

2)

2010 5 , 1 ,

7 .

35% , 85% .

“

. .

,

.”

,

, .

, ,

.

“ 1~2

. , ,

.”

3)

“2

,

.

”

.

.

“

, . ,

, , ,

9 6 4 .

.”

.

.

“ 20% ,

. 2010

,

.

”

, ,

.

.

4) ·

40

50 “

.

. .”

.

4 ,

. “ ,

, .

.

.”

사. 사회적기업 경영에 있어 애로사항

. “

.

, ,

” .

. “

. .

”

.

○○

.

“ , 10%

6 .

, .”

○○ ,

. “ ,

4 ,

”

.

“ .

, .

.

.”

.

.

아. 사회적기업의 강점

’

.

’

.

“ ,

’

.

.”

. ,

.

자.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차. 사회적기업 전망에 대한 견해

○○

.

,

,,

,

.

○○

. “

. ,

.

,,

.

4. 사례 C: 장애인서비스 기업(비영리법인)

- ❑ 주요 사업 내용: 장애인지원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등
- ❑ 운영주체의 특성: 비영리법인
- ❑ 사회적기업 유형: 일자리제공형
- ❑ 대상지역 범위: 도의 일반시 중심이나 근방의 시에서 이용자가 옴.
- ❑ 이용자 규모: 1일 80여명(프로그램 이용자, 까페이용자 등)
- ❑ 종사인력 규모: 33명

가. 사회적기업 인증 이전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2006 ○○ ○○

, 2008 .

97

2006 ○○ ○○

, 2008

.

, , ,

,

. ,

2010 .

“ ,

2010 2 .

,

.”

“

,

.

.”

나. 사회적기업 인증과정에서의 정부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사회적기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

“

.”

,

. “

, , …

”

.

“

”

.

라. 사회적기업 인증이후의 변화

’ ’

. 1997 5 18

2 , 33 .

’ ’

’ .

. “

”

’

.

’

. , .

’

.

“ ’ ’ MOU

’

.”

“

. .”

“ , ○○

,

. ○○ .”

마.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이점

,

,

. “

, ,

” ,

, ,

. “ 100% ,

” “

,

, …. ,

” .

바. 기업의 운영

1)

,

.

, .

.

“ ,

.

, , , .”

(,), ,

.

. .

2)

3 3 .

80% , .

( ),

.

,

40% . “ 2

, .”

3)

,

.

,

. .

“ ,

.”

.

4) ·

33 . 1997

5 18 , 2

.

, 3

10 . .

사. 사회적기업 경영의 애로사항

. “

”

.

,

.

. “

.

.”

, 1 2 ,

,

.

아. 사회적기업의 강점

,

.

.

“ .

.

.

, ,

.

.

.

.”

자.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

, .

,

.

“ ‘ ’

.

.”

“

. ,

.”

“ .”

차. 사회적기업 전망에 대한 견해

’

.

“

. ’

.

.”

“ .”

5. 사례 D: 장애아동서비스 기업(비영리법인)

- ❑ 주요 사업 내용: 장애인지원 프로그램(장애아동 통합지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 ❑ 운영주체의 특성: 비영리법인
- ❑ 사회적기업 유형: 일자리제공형
- ❑ 대상지역 범위: 도의 일반시, 1개 동이 주요 대상
- ❑ 이용자 규모: 월평균 200명 (취약계층 30%, 일반계층 30%, 고급서비스대상 40%)
- ❑ 종사인력 규모: 30명

가. 사회적기업 인증 이전 사업

○○

,

. ,

, ,

, ,

.

○○ 1996 .

.

“ , ,

.

○○ ○○

.

,

. ,

.”

○○ “

”

. 2001

, . .

,

.

“ .

, ,

.

.”

6

.

나. 사회적기업 인증과정에서의 정부지원

. ,

, , ,

.

“

” . ,

,

.

“

, .

10 30 , 80 .

,

.

20 20

.

. ,

”

.

, “

.

,

”

.

○○

.

. “ 10

.

.

, .”

다. 사회적기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

,

.

“ (seed money), .

. ,

,

.”

‘ ’

.

, . “

.

,

”

.

“

”

.

라. 사회적기업 인증이후 변화

,

6 .

,

.

“ 2007 6

150 , .

2005 13 2009 88

5 , 30

. 5

.” 50% , ,

3~5

○○

’

.

“ .

’

. ’

, .”

마. 사회복지서비스제공의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이점

. “

”

.

“

.

’

.

.”

. “ 100% .

’

”

.

바. 기업의 운영

1)

○○ ,

, . .

,

.

.

“ .

. ,

.

.

,

.

○○

.”

,

1 .

. ○○

“ ,

”

.

2)

3500 , 15% .

, “

”

.

60%

, 70% .

, ,

.

,

.

3)

,

.

, ,

.

“ ,

.

.”

4)

”

.

.

.

,

.

사. 사회적기업 경영의 애로사항

“ ”

.

,

.

“

, … .”

“

”

.

“ ,

. ,

. 80% ,

60% .

.”

, ,

, .

차. 사회적기업 전망에 대한 견해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150 ’

”

’

.

6. 사례 E: 의료서비스(생활협동조합)

- ❑ 주요 사업 내용: 일반시에 거주하는 조합원들(4,700가구)이 출자하여 의원, 한의원, 치과, 건강검진센터, 요양원, 가정간호사업소 등 운영
- ❑ 운영주체의 특성: 협동조합
- ❑ 사회적기업 유형: 일자리제공형
- ❑ 대상지역 범위: 도의 일반시 전체, 1개 동이 주요 대상
- ❑ 이용자 규모: 연간 의원 3만2천명, 한방 1만1천명, 검진 2천2백명, 치과 8천명, 방문요양 16800회 (취약계층은 30%)
- ❑ 종사인력 규모: 62명

가. 사회적기업 인증 이전 사업

○○ ,

2000 . 2003

, 2008

.

“○○

,

” .

.

나. 사회적기업 인증과정에서의 정부지원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사회적기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

,

.

. “

,

,

. ,

”

.

라. 사회적기업 인증이후 변화

3 . 20

, 62 ,

.

, , ,

,

.

, “

. , ,

.

,

”

,

. , “

,

”

.

, “

”

,

MOU

, .

마. 사회복지서비스제공의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이점

,

(

)

.

“

,

.

.

,

”

,

,

.

“

.”

,

11

.

“

,

11

.

,

,

”

.

“

.

.

.”

바. 기업의 운영

1)

,

.

“ . 15

. ,

, ,

,

.”

“ , 33

130 ,

” ,

.

2)

2008 3 8 .

“ .

,

”

, .

“ , .

. ,

,

.”

3)

.

“

.

, ,

10

.” . , .”

. ,

, ,

.

“ ,

.

, .”

4) ·

“

”

.

“ ”

.

, 6

“

’

”

.

’

.

사. 사회적기업 경영에 있어 애로사항

’

.

“

.

’

.”

’

.

“

”

.

아. 사회적기업의 강점

자.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 “

.

,

,

” “

”

,

. ,

.

,

.

“ . 80% ,

.

.

.”

,

.

차. 사회적기업 전망에 대한 견해

.

“ , ,

, .

, ” (2 ,
) .
“
. 2 ,
.”
,
. “
. .
,
”
.
“ ”
“
”
.

7. 사례 F: 노인서비스 기업(비영리법인)

- ❑ 주요 사업 내용: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유·무료 간병인 서비스
- ❑ 운영주체의 특성: 비영리법인
- ❑ 사회적기업 유형: 혼합형
- ❑ 대상지역 범위: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위치한 구의 이용자가 대부분
- ❑ 이용자 규모: 35명
- ❑ 종사인력 규모: 21명(14명 월급제, 이외 시간제)

가. 사회적기업 인증 이전 사업

○○

60

.

.

,

.

,

.

.

○○ , 1993

2006 , 2007

, 2008

.

2009 8

11 . 2011

, ,

.

.

“ (

) .

, .

, , (

) ,

.

.

,

.

.”

나. 사회적기업 인증과정에서의 정부지원

2010 4

, 1 1

.

다. 사회적기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

○○

.

,

,

,

.

“ ( )

, ,

.

,

.

.”

“ .

,

라. 사회적기업 인증이후의 변화

. “ ,

. ,

.”

. “

,

”

○○

,

.

“

. 2010 ,

.

(, ,)

,

.”

,

, “ ( )

.

”

.

.

, 2010

60~70 (2011) 35

마.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이점

.”

바. 기업의 운영

1)

○○

.

“

.”

“ ,

.”

,

.

2~3 (

, ,)

.

( ) .

2)

○○ , 75~80%

. ,

80~90%, .

.

80%, 20%

. ,

. “

, 13 (21) .

.”

(

)

( ) .

.

, ○○

.

“ .

10 .

, 3

.”

3)

.

(

),

, /

4) ·

2010 40 , 21

(13~14 ,) . 60~70%

(, 55) .

, 1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사회적기업 경영의 애로사항

. “

’

.

”

.

“

’

”

.

. “

’

’

’

.

.”

아.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

.

“ ,
, ‘ ’ ‘
, ’ ‘ ’
.
.”

8. 사례 G: 노인서비스 기업(사회복지법인)

- ❑ 주요 사업 내용: 고령자 일자리 창출, 경로당의 지역밀착형 효도사업, 한글 세계화운동 (방문요양사업, 실버생활용품, 행사용품, MRO 제품 유통 등의 수익사업도 실시)
- ❑ 운영주체의 특성: 사회복지법인
- ❑ 사회적기업 유형: 혼합형
- ❑ 대상지역 범위: 서울시를 전역으로 하며, 위치한 구와 동이 주요 대상
- ❑ 이용자 규모: 월평균 106명(방문요양서비스 86명, 노인돌봄서비스 20명)
- ❑ 종사인력 규모: 월평균 70~80명

가. 사회적기업 인증 이전 사업

○○ ,
, ,
, MRO
.
○○ ,
, .
1992 ○○ ,

○○ , ,

,

. 1995 , 2007~2008

, 2008

.

2009 12 .

.

○○

,

.

“

.

, .”

“

.

, 2008

.

,

, ,

.”

나. 사회적기업 인증과정에서의 정부지원

’ . “

2010 2011

’

3 .”

2010 . . .

.

. “ . .

.”, “ . .

’

”

다. 사회적기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

○○

.

“

.

.”

.

.

“

, ,

”

“

, .

.”

“

,

. 90%

, .

.

.”

.

142

“ (

. , ,)

,

”

“

.”

라. 사회적기업 인증이후의 변화

,

.

,

.

“ 3 ,

.

.

,

.”

마.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이점

○○

.

,

.

“

,

.

.”

“ ,

,

.”

바. 기업의 운영

1)

.

,

.

, .

“ , (

) .”

“ .

○○ 20 ,

.”

2)

○○

. 91%, 9%

, .

94.2%, 5.8% .

,

9:1 .

3) .

70~80 40% .

, .

. “ , ,

2% ” .

.

사. 사회적기업 경영의 애로사항

.

.

“

. ,

. 550 , 2

,

, 90%

, .”

,

.

“

.

, .”

“

.

.”

“

”

.

.

“

,

(

).

,

(,)

.”

아.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

.

“

.

20

,

.

.”

“

.

,

.

.”

,

,

. “

, ,

,

." .

9. 사례 H: 종합돌봄서비스 기업(상법상 주식회사)

- ❑ 주요 사업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베이비시터파견 등 돌봄 종합서비스 제공
- ❑ 운영주체의 특성: 상법상 주식회사(2009년 인증)
- ❑ 사회적기업 유형: 혼합형
- ❑ 대상지역 범위: 노인재가서비스는 위치한 구, 유료 베이비시터 및 산모도우미등은 인근 4개 구를 포함하여 시 전체 대상
- ❑ 이용자 규모: 월평균 노인 80명, 그 외 서비스 20명으로 총 100명(취약계층 80%)
- ❑ 종사인력 규모: 51명

가. 사회적기업 인증 이전 사업

○○ , ,

, , ,

.

,

,

.

,

.

○○ 2000 7
(○○) ,
, ,
. 2004
, 2006
. 2008
○○ , KT&G
. 2009 11
.
2008 KT&G ,
. ○○
.
“ 2001
, 2006

, 2008 7
2008 8 ○○ .”
. , “
.”
“
.”

나. 사회적기업 인증과정에서의 정부지원

○○ KT&G

10 , 5
15 90%
. 15 ,
,
.
“
, .”
.
2011 10 2 .
.
“ .
,
,
.”

다. 사회적기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

○○ ,
, , , ,
.
, ,
, , ,
.

. 20~30

.”

라. 사회적기업 인증이후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2011) , ,

( ), .

25 57 (

6) .

.

‘ ’

. 2008 4 , 2009 3
, 2010 1 5 , 82
, 3
.
.
.
3

마.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이점

바. 기업의 운영

1)

1

, A B ,

,

.

, 2

. “

,

,

,

.”

2)

80% , ,

, 20% , 100%

.

86%, 14% . 86%

, 14%

, , , .

.

, ,

(, ,), .

2 ,

400 , 5 .

3)

. “ 3

.

.”

.

, “

,

” . “

.

,

.

.”

. “OO

, ,

” . “

1~2 , 2~3

,

”

.

4) ·

○○

○○ .

57 6 51

, (55)

40%(20), 15

.

1~2 ,

“ .” “

, .” “

”

.

“ ,

.

15 , 1~2

.” ,

.

“ ” ,

.

○○ ,

. “

1~2

,

60% .”

,

“

.

. ,

,

” .

,

1

. , ,

.

’

“

’

”

. “ ’ ’

” .

사. 사회적기업 경영의 애로사항

. “ .

.

+*a* ’

.”

. “

’

”

.

“

”

.

아.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 ’
.
“
.
. 2~3

.

.

.

,

.”

10. 사례 I: 노인 및 장애인 서비스 기업(상법상 주식회사)

- ❑ 주요 사업 내용: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장기요양사업
- ❑ 운영주체의 특성: 상법상 주식회사(2009년 인증)
- ❑ 사회적기업 유형: 일자리제공형
- ❑ 대상지역 범위: 일반시 전체
- ❑ 이용자 규모: 750명(사회서비스 500명, 장기요양 250명)
- ❑ 종사인력 규모: 280여명(정규, 비정규, 시간제, 단시간 근로자 모두 포함)

가. 사회적기업 인증 이전 사업

○○ ,

, .

2000 ○○ (○○)

, 2009 .

,

.

“ ,

.

.

.”

“ ”

. ,

.

“

.

.

,

,

,

.”

나. 사회적기업 인증과정에서의 정부지원

.

. “ ○○

. ○○

.”

,

, “

”

.

다. 사회적기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

○○ “ ” . “ ” . “ 3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사회적기업 인증이후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2009 2010 3 .

3 , .

. “

. ’

. 33 (

) 57 .

.”

’

’

1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이점

. “

,

.

.”

. “

.”

바. 기업의 운영

1)

○○ , , 3 ,

, 4

.

, 1 ,

.

, .

“ ,

, .”

. “‘

, ’ ” .

○○ ,

,

.

2)

○○ 90%, 10% ,

60% , 40% .

95.6%, 4~5% .

2010 1

. .

,

, , 3

.

3)

○○ “ 1

.

,

.”

-

.

6 , 500

. ,

.

. , ,

. 3

.

4) ·

, , 280

. 2010 209

.

49~50% , “

.

” . ,

.

, 8~9% ,

30% , 5%

. “ ,

1 27~36 24~18 ,

, ,

”

. “ .

”

.

’

.

“

’

’

”

.

사. 사회적기업 경영의 애로사항

.

“

.

.”

.

“ 150 .

’

.

.

?

.”

“50 5% .

50 150

.

. ,

.”

,

10%, .

“ 50 .

.”

, .

“ ,

500 . , , ,

4 .

, .

.

,

,

, .”

아.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 ,

.”

, “ ,

”

.

자. 유관기관과의 관계

A4

.

.”

. “

’

.

.

.”

차.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 ’

.

’

. “

’

.”

○○

. “ ’

. ’

.”

. “

’

”

.

05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실태 분석

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실태 분석

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 『 』

.

, .

, 2007 2010 12

501 . 9

, · (59), (48),

(28) 135 27.0% .

, · ·

, , , , , , ,

,

.

, 25.2%

.

(18.9%), (17.1%), (13.5%), (9.0%)

. 41.7%

, 3.6%

.

〈표 5-1-1〉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별 분포

(: , %)

	빈도(%)
사단법인	28 (25.2)
비영리민간단체	21 (18.9)
주식회사	19 (17.1)
사회복지법인	15 (13.5)
협동조합	10 (9.0)
비영리법인	5 (4.5)
재단법인	4 (3.6)
공익법인	3 (2.7)
기타	6 (5.4)
계	111(100.0)

: · (2010), 『 』 .

, 14.4%, 30.6%, 55.0% .

501 (22.6%, 24.8%)

.

, ,

.

.

.

43.2%, 45.9%, 10.8%

. ,

.

.

〈표 5-1-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지역 분포

(: , %)

	빈도(%)		빈도(%)
서울	16 (14.4)	자치구	48 (43.2)
광역시	34 (30.6)	시	51 (45.9)
도	61 (55.0)	군	12 (10.8)
계	111(100.0)	계	111(100.0)

: · (2010), 『 』 .

. 55.3% 2007

, 44.7% .

〈표 5-1-3〉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설립연도별 분포

(: , %)

	빈도(%)
2007년 이전	46 (44.7)
2007년 이후(2007년 포함)	53 (55.3)
계	103(100.0)

: 1) 103 .
: · (2010), 『 』 .

〈표 5-1-4〉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인증연도 기준 사업운영 기간 현황

(: , %)

		빈도(%)
인증연도 기준, 이전 사업운영 기간	1년	16 (15.5)
	2년	19 (18.4)
	3년	13 (12.6)
	4년~5년	11 (10.7)
	6년~10년	9 (8.7)
	11년~20년	6 (7.8)
	21년 이상	3 (2.0)
사업운영 및 인증기간 동일		25 (24.3)
계		103(100.0)

: 1) 103 .
: · (2010), 『 』 .

,

. 〈 5-1-4〉

24.3%, 1

15.5% , 40%

.

〈 5-1-5〉

. 『 』

73 , ,

47.2% .

12.5%, 16.7%,

11.7% .

〈표 5-1-5〉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인증이전 사업유형

(: , %)

	빈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경험	34 (47.2)
자활사업 경험	9 (12.5)
사회복지기관 및 업무 경험	12 (16.7)
지역사회단체/자발적 모임 경험	13 (11.7)
기타	4 (5.6)
계	72(100.0)

: 1) 73 .
: · (2010), 『 』 .

〈 5-1-6〉 ( )

.

59.3%,

32.4% .

〈표 5-1-6〉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운영의 독립성

(: , %)

	빈도(%)
독립적으로 운영됨	70 (64.9)
모법인(기관)에 소속되어 한 분야로 운영됨	35 (32.4)
기타	3 (2.8)
계	108(100.0)

: 1) 3 108 .
: · (2010), 『 』 .

111

, .

. 39 .

36 , 33 ,

29 , ·

, 27 ,

23 , 22

.

〈표 5-1-7〉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조사대상 제공 서비스

(: , %)

		빈도(%)
노인	무료 간병서비스	16(4.2)
	유료 간병서비스	36(9.4)
	장기요양보험 관련 수발 서비스	39(10.1)
	단기보호 서비스	6(1.6)
	주야간보호 서비스	12(3.1)
	이동목욕·재가방문 목욕서비스	27(7.0)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관련 수발 서비스	27(7.0)
	방문 진료서비스	6(1.6)
	농촌거주 노인 재가서비스	4(1.0)
	실버용품 판매·임대	2(0.5)
	노인 여가·건강증진 서비스	5(1.3)
	장기요양보험기관 관련 컨설팅 서비스	2(0.5)
	독거노인 장례지원 서비스	1(0.3)
여성·아동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파견서비스	33(8.6)
	가사지원 서비스	23(6.0)
	아동 방과후 학습지도 및 관련 센터 운영	29(7.5)
	산후용품 판매·대여	2(0.5)
장애인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5(1.3)
	장애인(아) 취업지원 서비스	2(0.5)
	장애인 여행관련 서비스	1(0.3)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서비스	1(0.3)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11(2.9)
다문화	이주여성 보육·가사지원 서비스	1(0.3)
	외국인 노동자 상담 및 관련 서비스	1(0.3)
의료	의료기기 판매·임대	1(0.3)
	의료서비스(진료·상담·약제 등)	9(2.3)
	지역사회 보건예방 서비스	8(2.1)
취업지원	취약계층(장애인 제외) 일자리 연계	22(5.7)
	요양(간병)전문인력 양성교육 서비스	12(3.1)
기타	일반 관광관련 서비스	1(0.3)
	청소 및 용역 서비스	6(1.6)
	방역 서비스	1(0.3)
	요양(간병)서비스 인식 및 처우개선	1(0.3)
	통합사례관리	3(0.8)
	푸드뱅크 관련 서비스	4(1.0)
	평생교육 관련 서비스	1(0.3)
	저소득층 도시락·밑반찬 제공 서비스	5(1.3)
	출장요리 등 푸드사업	1(0.3)
	각종 물품 재배·생산	13(3.4)
	사회적기업 연구·홍보	5(1.3)
계		385(100.0)

:

2. 사회적기업 사례조사 결과 및 시사점

가. 조사대상 기업의 일반현황

.

21 , 9 , 3 , 3
, 2 , 1 , 1 ,
2 . 8 ,
4 , 7 , 1 .
〈 5-2-1〉 .

,

. . . .

8 .

300 (45%)
. 2011 10 1 50 ,
12 . 「 」 , 2007 ~2010
( )
24.2 (10 29.3%, 11 ~30 47.1%)
,
. , 47.4%, 65
2.9%, 4.1% , 88.9%
.

〈표 5-2-1〉 조사대상 기업의 일반현황

		빈도(%)
사업지역 범위 (개소, %)	소재지 및 2개이상 읍·면·동	-
	소재지 시·군·구	9(45.0)
	2개이상 시·군·구	3(15.0)
	소재지 시·도	4(20.0)
	2개이상 시·도	3(15.0)
	전국	1(5.0)
월평균 이용자규모 (명, %)	1 ~ 300명 미만	9(45.0)
	300 ~ 600명 미만	4(20.0)
	600 ~ 900명 미만	2(10.0)
	900명 이상	5(25.0)
	취약계층 이용자 비율	47.4(33.5)
총 직원수 (명, %)	2008년	47.3(48.1)
	2009년	55.7(48.5)
	2010년	48.0(41.5)
	2011년 (10월 기준)	50.2(48.9)
연간 이직자수 (명, %)	2008년	14.6(17.5)
	2009년	23.7(22.9)
	2010년	18.8(22.7)
	2011년 (10월 기준)	11.8(12.9)
직원 구성비 (평균, 표준편차)	취약계층	47.4(23.2)
	65세 이상	2.9(4.8)
	등록장애인	4.1(7.6)
	여성	88.9(19.1)
	기타	4.2(7.6)

: 20 , 17 .

.

2008 7 9

, 2010 8 .[12]

,

.

, 38.8%

24.0% , 4.2% 18.0%

12) (, 2010)

, 36.9% 42.5%

.

, 65~74% .

.

2010 4.0% , .

〈표 5-2-2〉 조사대상 기업의 수입 및 지출구조

(: %)

		2008년	2009년	2010년
기업 수입구조	총계	696 (872.7)	917 (906.7)	806 (647.1)
		100.0	100.0	100.0
	정부지원: 인건비 직접지원	38.8	32.9	24.0
	정부지원: 사업비(바우처포함)	4.2	16.6	18.0
	이용자 직접부담(시장판매)	36.9	46.0	42.5
	후원·기부 등	4.0	1.2	9.2
	모기업·모법인 지원	0.1	0.2	0.1
	기타	16.0	3.1	6.2
기업 지출구조	인건비	65.0	73.7	66.3
	사업비	5.7	8.6	10.2
	시설비·운영비 등 경비	16.6	14.5	14.9
	기타	0.4	0.4	0.9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1.0	3.5	4.0

: 1) 2010 17, 17 , 2009 16, 17 , 2008 16, 12 .
2) .
3) , 100 .

나. 사회적기업 인증 이전 사업

,

, ,

, ,

, , , ,

.

1)

2011 ,

.

, 1

.

(,) ,

( ) 6 .

3 , 2

, 1

.[13] 1 ,

.

.

13) 2

2 ( ) (

, 2011).

〈표 5-2-3〉 조사대상 기업의 인증 이전 형태

(: , %)

	빈도(%)
모법인 소속 사업단(목적사업, 부설기관)	11(52.4)
독립적인 법인(단체)	6(28.6)
자활사업단	3(14.2)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기업 설립	1(4.8)
계	21(100.0)

모법인 소속 사업단[14]

"본 사업단은 모법인의 사회적일자리 사업단으로 시작하여 진행함. 사회적기업 인증이후에도 모법인내 사업단으로 운영하고 있음."

자활사업단

"처음에는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경험과 자립의 토대를 2008년 사원들의 출자를 통해 ○○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상법상 법인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후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음."

"자활센터의 사업단으로 운영하다 2008년 법인(상법상 회사)으로 전환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음."

2)

5.1 , 2/3

1~4

. 2 .

20

. 21 8

.

14)

, .

〈표 5-2-4〉 조사대상 기업의 인증 이전 사업경험

(: , %,)

	빈도(%)
1년	2(9.5)
2~4년	11(52.4)
5~7년	4(19.0)
8년 이상	4(19.0)
평균	5.1
계	21(100.0)

, .

‘

,

, ‘ ,

.

,

, ,

.

, (

) .

,

. 4

.

, ,

,

,

.

.

〈표 5-2-5〉 조사대상 기업의 인증 계기

(: , %)

	빈도(%)
사회적기업의 가치 추구에 대한 동의	11(52.4)
정부지원으로 인한 안정적인 사업 운영	7(33.3)
기타	3(14.3)
계	21(100.0)

사회적기업의 가치 추구에 대한 동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모법인의 자체적인 관심과 고민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사회적기업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단체연대활동을 통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음. 또한 기업적 수익창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체 평가,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추진을 준비함."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취지에 부합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인증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음."

"해외의 사례들로부터 사회적기업을 접하였고, 운영 방식이나 이윤의 배분형태를 사회적경제 영역과 접목한 기업을 고민하던 중, 때마침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이에 동참함."

"다년간 자활경력을 통해 공동체훈련을 많이 해왔고, 공동의 회사를 설립하고자 희망하였음. 회사설립을 통해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 등 주인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함."

정부지원으로 인한 안정적인 사업 운영

"사회서비스분야의 정부지원이 적고 항상 부족한 예산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인증을 받게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될 경우 지원이 연장되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인증을 받게 되었고 또한 사회적기업이 되면 세제 혜택 등 여러 지원이 있다는 강점 때문에 받으려고 노력함."

"2008년도에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지원을 받던 중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받으면 3년 연장 지원된다고 해서 인증을 받게 됨."

3)

,

, ,

.

,

, .

〈표 5-2-6〉 조사대상 기업의 인증 시 주로 기대한 점

(: , %)

	빈도(%)
기업의 안정적 운영 및 자립기반 확립	21(33.3)
직원(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18(28.6)
기업 이미지 개선 및 위상 정립	10(15.9)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5(7.9)
새로운 패러다임, 모델 구축	4(6.3)
사회적기업 비전 실현	2(3.2)
기타	3(4.8)
계	63(100.0)

: , 21 .

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1)

(1)

,

, , , .

,

,

, , ,

.

, ,

,

.

4

.

,

.

〈표 5-2-7〉 조사대상 기업의 인증 이전 준비과정 지원 주체 및 내용

(: , %)

		빈도(%)
지원 주체	모법인 및 관련단체	6(28.6)
	고용노동부	6(28.6)
	보건복지부	2(9.5)
	지자체	2(9.5)
	기타	1(4.8)
	지원 받지 않음	4(19.0)
	계	21(100.0)
지원 내용	법인 및 기업 설립 자문	5(33.3)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4(26.7)
	자금 및 인력지원	3(20.0)
	인증절차 설명 및 지원	2(13.3)
	기타	1(6.7)
	계	15(100.0)

:

(2)

.

3 , 2

.

〈표 5-2-8〉 조사대상 기업의 인증과정 지원 주체 및 내용

(: , %)

		빈도(%)
지원 주체	모법인 및 관련단체	4(20.0)
	고용노동부	10(50.0)
	지자체	1(5.0)
	기타	2(10.0)
	지원 받지 않음	3(15.0)
	계	20(100.0)
지원 내용	인증절차 지원	11(57.9)
	인건비지원	5(26.3)
	기타	3(15.8)
	계	19(100.0)

: .

(3)

, , ,

, ,

.

, .

. ,

,

.

,

.

〈표 5-2-9〉 조사대상 기업의 운영과정 지원 주체 및 내용

(: , %)

		빈도(%)
지원 주체	모법인 및 관련단체	1(4.0)
	고용노동부	15(60.0)
	지자체	4(16.0)
	기타(민간기업 등)	5(20.0)
	계	25(100.0)
지원 내용	재정 지원(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19(79.2)
	기타(교육, 차량지원 등)	5(20.8)
	계	24(100.0)

: 19 , 4 .

2)

(1) **15)**

76%

(16),

62.5% 10 . 39 (3.3

15) 5
40 , 100% 98 .
1 100%, 2 90%, 1 90%, 2
80%, 3 70% , (
, 2011).

)

41 (3.4)

30 (2.5)

〈표 5-2-10〉 조사대상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관련 사항

(: , %)

		빈도(%)
지원 여부	지원받은 경험이 있음	16(76.2)
	현재 지원받음	10(62.5)
	과거에 지원받았으나, 현재 지원받지 않음	5(37.5)
	지원받은 경험이 없음	5(23.8)
	계	21(100.0)
지원 기간	1년 미만	2(12.5)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3년 미만	2(12.5)
	3년 이상	12(75.0)
	평균	3.3
	계	16(100.0)
개선 사항	획일적 지원에 대한 개선	3(23.1)
	지속적인 지원	3(23.1)
	단순 인건비 지원 축소 및 변경	2(15.4)
	지원 지침의 잦은 변경	2(15.4)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인건비 책정	2(15.4)
	기존 근로자 퇴사 시 신규채용 기간 관련 문제	1(7.7)
	계	13(100.0)

: .

(2) **16)**

90% (19

),

89.5% 17 . 31 (2.6)

,

32 (2.7) . 24

16) (2011) 4 40

, 2011 1 6 , 2 7 ,

4 , 4 7 9 .

(2) .

〈표 5-2-11〉 조사대상 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사항

(: , %)

		빈도(%)
지원 여부	지원받은 경험이 있음	19(90.5)
	현재 지원받음	17(89.5)
	과거에 지원받았으나, 현재 지원받지 않음	2(10.5)
	지원받은 경험이 없음	2(8.5)
	계	21(100.0)
지원 기간	1년 미만	3(16.7)
	1년 이상 ~ 2년 미만	6(33.3)
	2년 이상 ~ 3년 미만	1(5.6)
	3년 이상	8(44.4)
	평균	2.6
	계	18(100.0)
개선 사항	지속적인 지원	6(54.5)
	지원 액수 증대	3(27.3)
	현 수준이 적절	2(18.2)
	계	11(100.0)

: .

. ,

, .

,

.

,

. 2

.

(3) [17]

76%

(16),

94% 15 .

21 (1.8) ,

24 (2)

. 16

(1.3) .

,

.

,

. ,

, 150

,

. ,

(, , , , ,)

.[18]

17) 3 , 3
, 150
(, 2011).

18) (, 2011).

〈표 5-2-12〉 조사대상 기업의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관련 사항

(: , %)

		빈도(%)
지원 여부	지원받은 경험이 있음	16(76.2)
	현재 지원받음	15(93.8)
	과거에 지원받았으나, 현재 지원받지 않음	1(6.2)
	지원받은 경험이 없음	5(23.8)
	계	21(100.0)
지원 기간	1년 미만	1(6.25)
	1년 이상 ~ 2년 미만	8(50.0)
	2년 이상 ~ 3년 미만	6(37.5)
	3년 이상	1(6.25)
	평균	1.8
	계	16(100.0)
개선 사항	지속적인 지원	8(57.1)
	지원액수 증대	5(35.7)
	전문인력 인정범위의 확대	1(7.1)
	계	14(100.0)

: .

(4) **19)**

43% (9

),

77.8% 7 . 1

, 1 (1) 6 (6 ,

) , 2.8

.

- , , , , ,
3
- (,)
- : ,
300 , ,
2

19) (2011)

4

50% .

20)

. (2010) 2

, 30 50%

.

,

50% .

4

,

.

20)

,

(, 2002).

2009 1 11%,

1 14% . 50%

( ), 2 , 2

(, 2010).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과세표준 2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감면전 법인세율		11%	11~22%	22%
50% 감면후 법인세율	최저한세 적용 전	5.5%	5.5~11%	11%
	최저한세 적용 후	11%	11%	14%

〈표 5-2-13〉 조사대상 기업의 법인세 감면 관련 사항

(: , %)

		빈도(%)
지원 여부	지원받은 경험이 있음.	9(42.9)
	현재 지원받음	7(77.8)
	과거에 지원받았으나, 현재 지원받지 않음	2(21.2)
	지원받은 경험이 없음	13(57.1)
	계	21(100.0)
지원 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3(33.3)
	2년 이상 ~ 3년 미만	1(11.1)
	3년 이상	5(55.5)
	평균	2.8
	계	9(100.0)
개선 사항	최저한세 규정으로 감면혜택 저조	4(50.0)
	감면 기한 연장	3(33.3)
	흑자구조가 아니므로 혜택 받지 못함	1(16.7)
	계	8(100.0)

: .

3) **21)**

76% (16),

37.5%(6)

, 1

, .22)

1 3 , 1 8

21)

, - -

. 300

,

80~90% (, 2011).

22) , (5

30)

, (

, 2011).

.

35.3%

,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 1

.

,

.

,

33% ,

86%

.

,

, ( )

,

.

,

, , ,

,

.

,

,

.

,

,

.23)

,

,

,

.

,

.

,

,

201

,

.

,

.

V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실태 분석

23) (, 2011).
: ,

:

: , ,
,

〈표 5-2-14〉 조사대상 기업의 경영컨설팅 관련 사항

(: , %)

		빈도(%)
지원 여부	지원받은 경험이 있음	16(76.2)
	기초(무료) 컨설팅	10(62.5)
	유료 컨설팅	6(37.6)
	지원받은 경험이 없음	5(23.8)
	계	21(100.0)
개선 사항	미흡한 컨설팅(현장 전문가의 부재)	6(40.0)
	사업추진시기가 늦음	3(20.0)
	지속적인 컨설팅 필요	3(20.0)
	기타	3(20.0)
	계	15(100.0)
도움 정도	기초(무료) 컨설팅	
	도움이 됨	5(33.3)
	도움이 되지 않음.	10(66.7)
	계	15(100.0)
	유료 컨설팅	
	도움이 됨	6(85.7)
	도움이 되지 않음	1(14.3)
	계	7(100.0)

: 1) .

기초 컨설팅 관련 의견

"기초 컨설팅은 일정수준의 기업운영방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함.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을 듯함."

"기초 컨설팅으로 회계 및 인사노무 컨설팅을 받았는데, 노동부가 지정한 컨설팅 기관이 선정되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였고

실제로 도움받고 싶었던 부분은 지원내용에 없다고 하여 받지 못함."

"기초 컨설팅은 경영, 재무, 인사, 노무 등을 함께 실시했으며 사회적기업이나 돌봄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료제출로 업무가 폭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생겼음. 오히려 같은 돌봄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받는 컨설팅의 경우 우리상황에 대한 이해가 많아서 도움을 많이 받음."

"무료 컨설팅에서 5년 동안 자립을 위한 계획수립에 대해 컨설팅을 받아 체계수립에 도움이 되었음."

"무료 컨설팅은 회계 및 노무 컨설팅으로 법정휴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도움이 되었음."

"기초 컨설팅은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생산성 증대요인 및 경쟁력 확대방안 개발에 도움을 주었으며, 현재 노인요양사업 및 노인복지사업의 가치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통한 안정적 운영방안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게 해줌."

"기초컨설팅은 서류에 의존한 컨설팅으로 향후 사업전망이나 비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음."

"기초 컨설팅은 정부 정책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컨설팅이 아닌 근시안적인 컨설팅을 함. 간병시장의 비급여에 대하여 성급한 대처로 경영상 도움이 되지 않음. 문제 제기만 하였지 컨설팅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상황과 결과까지도 확인하지 않음."

"고용부에서 의무적으로 경영상황에 대한 진단 및 발전전망을 내오기 위한 기초 컨설팅을 실시하였는데 주로 노무 및 회계분야의 형식적인 컨설팅밖에 되지 않았고, 일정 등 욕구사정 부분이 간과된 채 치러내기식 컨설팅이어서 비록 자부담은 없지만 국가적으로 매우 비용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함. 이후 함께했던 업체를 통해 "○○○○○"라는 명칭으로 현재 구성원들의 욕구 및 회사에 대한 요청사항을 면밀히 면접조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운영규정 개정 등 실질적인 운영도움을 받아 매우 효율적이었음. 전문성이 담보되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컨설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기초컨설팅의 경우 1. 기업컨설팅을 적용하는데 기반조성(인력, 사업주의 마인드)이 안되어 있다는 점(인력자질부족) 2. 지속적인 연관성을 가지며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 3. 컨설팅 업체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식, 열의 부족이 문제임."

"노무컨설팅의 경우 기업운영의 경험이 부족하여 노무관리 인사, 경영에 있어서는 미숙한 점이 많은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유료 컨설팅 관련 의견

"무료로 지원받은 컨설팅 수준이 매우 기초적이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나, 유료 컨설팅은 회계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해주어 도움이 되었고, 1년간 회계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준 것도 매우 도움이 되었음."

"유료 컨설팅으로는 회계프로그램을 지원받았는데, 회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몇 개의 기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부분이므로 지원기관과 초기에 본 사업단에 맞는 회계관리를 교육받고 운영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됨."

4)

(1)

,

, ,

,

,

.

〈표 5-2-15〉 사회적기업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 , %)

	빈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14(53.8)
사회적기업 경영에 필요한 법률 및 행정지원	6(23.1)
기타	6(23.1)
계	26(100.0)

: 21 , 4 .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전반적 멘토링

"사회적기업을 비전으로 하는 조직에 대하여 기업윤리, 실질지원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함."

"전 직원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 막연한 지원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음. "

"너나없이 사회적기업에 진출하게 되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이 희석되고 기존 인증받은 사회적기업까지 매도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 개인업체의 성격을 지녀 사회적가치 실현 부분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다면 준비과정에서 아예 배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사회적기업은 단순히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한 기업이 아님을 인식하게 하고 사회적 목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상호 의사소통이 필요함."

"사회적기업 인증 후 그 기업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선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업종의 성공한 사회적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멘토링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준비과정에서 각 분야별 준비와 인증이후에 부딪히는 어려움 등이 다를 수 있음. 그러므로 사회서비스 분야별 기존 사회적기업 인증기업과 준비하는 기업의 멘토 관계 형태가 필요함. 특히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인증과정에 대한 준비 등을 상세하게, 그리고 1대1 면담지원이 가능한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함. 인증 이후에 겪게 되는 어려움은 교육에서 받지 못한 부분이 대다수였음. 그러므로 사회적기업을 운영, 참여해본 전문가 발굴 등이 필요함."

"사회적기업가를 교육 육성하여 사회적기업에 맞는 마인드로 운영할 수 있는 준비과정이 필요함. 기업의 숫자만 늘리지 않고 내실있게 운영할 지원(회계, 노무)과 지속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임."

사회적기업 경영에 필요한 법률 및 행정지원

"실무, 법적절차, 회계 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함."

"초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노무, 회계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이나 참여자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함(참여자의 일부는 취약계층이라서 교육정도가 낮아 이해가 부족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

기타

"현재의 소셜 벤처 인큐베이팅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의 (예비) 사회적기업을 꿈꾸는 사업가들이 좀 더 쉽게 (예비)사회적기업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함."

"지자체에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공모 및 기존 기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요청됨."

(2)

.

,

.

,

.

.

,

.

〈표 5-2-16〉 사회적기업 인증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 , %)

	빈도(%)
인증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12(57.1)
사회적목적에 부적합한 기업 추출	5(23.8)
사회적목적의 광범위한 적용	2(9.5)
기타	2(9.5)
계	21(100.0)

: 18 , 3 .

인증절차에 관한 정보제공

"지원기관 실무자의 현장 이해 부족, 인증준비에 대한 설명부족 등이 있음. 지원기관에서 분야별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관들이 인증 시 제출한 서류들을 샘플자료로 만들어서 인증을 준비하는 단체가 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봄."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시작하는 사회적기업에게 행정적인 절차를 잘 설명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잘 인증 받을 수 있게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기업 인증 도우미를 정부에서 파견, 1:1 맞춤 서비스를 시행한다면 사회적기업을 인증받는 데 있어 훨씬 수월할 것이라 봄."

"사업별로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하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진흥원 혹은 소상공인진흥원 등과 연계하여 컨설팅 및 준비과정을 충분히 거치도록 함."

사회적목적에 부적합한 기업 배제

"사회적기업을 "지원제도로만 활용"하고자 하는 일부 비사회적목적을 가진 사업자를 분류하여 제외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며 사회적목적에 대한 광범위한 적용이 필요함."

"사회적기업 인증이 남용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사회적기업가들을 위한 교육을 소정시간 이수하도록 하며, 그에 따른 교육지원이 필요함."

(3)

.

,

.

. ‘ ’

,

.

,

, ( )

, ,

.

4 , ,

.

,

,

.

〈표 5-2-17〉 사회적기업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 , %)

	빈도(%)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환경 및 사업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8(27.6)
기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실질적 지원	4(13.8)
중간관리자(전문인력) 등의 인건비지원 및 처우개선	4(13.8)
회계 및 노무관련 상담 및 지원	3(10.3)
사업분야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2(6.9)
전문가, 민간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활발한 연계	3(10.3)
연구과제 및 회계 제출서류의 축소	2(6.9)
기타	3(10.3)
계	29(100.0)

: 21 , 7 .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및 사업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잡는 법"을 알려주거나 환경을 구축해주었으면 함. 인건비 지원 등의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컨설팅, 사업개발비 등의 간접적인 지원방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개별 사업의 추진방식, 시기, 기간 등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한시적으로 인건비 지원 등은 한계가 있고, 자립할 수 있는 시장확보, 사업지원, 경영지원체계 필요함."

"1년에 사업개발비 1000만원 지원해주는 것보다 역량이 있는 외부 중간관리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함."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사회흐름 조성"

기업의 지속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인적, 재정적지원이 필요하며 현재 기업의 상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컨설팅 및 프로보노가 필요함."

"일자리 지원 위주의 단발성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가급적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인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인력지원 위주의 지원보다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고용이 많으므로 간접인건비 부분의 지출이 많은 관계로 현재 4년으로 제한된 사회보험료지원을 계속 해주는 등 지속적인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사업과정에 있어서는 임금지원 뿐만 아니라 운영자금을 저리 혹은 상환유예기간을 길게 두어 운영 시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지원되고 있는 인건비가 지원 중단되더라도 일반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관 사회적기업의 클러스트화가 필요함."

"돌봄분야 사회적기업은 단기간의 사회적일자리 지원을 통한 인건비지원형태가 아니라 사업주부담 4대보험료, 퇴직금 적립, 운영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돌봄서비스와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이후의 지원체계는 다양해야 하며 지역별로도 다양성이 보장되어져야 한다고 봄. (예로 제조업과 돌봄서비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과 보고체계를 같이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임. 제조업은 판로개척 및 시설설비 확충 등이 이루어지면 수익이 증대될 수 있으나 돌봄서비스 분야는 다름.)"

중간관리자(전문인력) 등의 인건비지원 및 처우개선

"소규모 사회적기업 대부분은 중간관리자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기업 중간관리자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회계 및 노무관련 상담 및 지원

"실무, 법적절차, 회계 등 상시 상담"

"사회적기업은 인사, 노무 ,경영,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대기업

에 비해 부족한 형편이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인사, 노무, 경영, 회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연계가 필요함. "

"지속적인 경영컨설팅 및 재정적 지원"

연구과제 및 회계 제출서류의 축소

"인증 후에는 사업성과나 결과보고서, 점검에 따른 부담이 사업에 전념하기 보다는 절차에 따른 보고성 자료제출 요구가 많은 점"

"연구기관, 정부기관의 비정형적인 연구작업이 너무 많음. 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의 정기보고(연1회)된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도 사회적기업의 투명경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고, 연구자들도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라. 인증 이후 변화

1)

,

. 76%

. 5 105

, 30.6 (12

).

, 1 (

) .

2

,

, ,

40% .

.

2 ,

1 .

〈표 5-2-18〉 사회적기업 인증이후 고용인력 수의 변화

(: , %)

	빈도(%)
증가하였음	16(76.2)
증가인력 수	367
증가인력 평균	30.6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음	2(9.5)
감소하였음	1(4.8)
변화없음	2(9.5)
계	21(100.0)

2)

.

. 6

,

,

.

3 ,

, ,

, 1

.

〈표 5-2-19〉 사회적기업 인증이후 업종 및 복지서비스 유형의 변화

(: , %)

		빈도(%)
업종 및 서비스의 변동 없음		9(47.4)
업종 변화	업종 증가	4(21.1)
	업종 변화	3(15.8)
서비스 변화	서비스 증가	2(10.5)
	서비스 변화	1(5.3)
계		19(100.0)

3)

.

2/3 , 2

4 .

.

,

. ,

‘ ’ ,

.

.

,

.

,

,

.

,

.

〈표 5-2-20〉 사회적기업 인증이후 이용자 수의 변화

(: , %)

	빈도(%)
인증으로 인한 이용자 수 증가	11(61.1)
인증과 이용자수 변화는 무관	7(38.9)
계	18(100.0)

4)

,

2/3 ,

3 .

,

. ,

. 7

.

〈표 5-2-21〉 사회적기업 인증이후 서비스 양의 변화

(: , %)

	빈도(%)
서비스 양 증가	11(61.1)
변화 없음	7(38.9)
계	18(100.0)

5)

80%

,

.

,

.

,

,

.

,

.

〈표 5-2-22〉 사회적기업 인증이후 서비스 품질의 변화

(: , %)

	빈도(%)
서비스 품질 향상	15(83.3)
변화 없음	3(16.7)
계	18(100.0)

6)

2/3 .

( )

,

.

4 ,

,

. 3

. ,

.

〈표 5-2-23〉 사회적기업 인증이후 정부기관과의 관계 변화

(: , %)

	빈도(%)
긍정적인 관계형성	13(65.0)
인증전후 차이 없음	4(20.0)
부정적인 관계형성	3(15.0)
계	20(100.0)

7)

,

77% .

.

.

,

4 .

2/3

.

,

. 3

,

, ,

.

〈표 5-2-24〉 사회적기업 인증이후 홍보 및 지역사회자원 동원 변화

(: , %)

		빈도(%)
홍보	인증이후 홍보 유리함	10(76.9)
	아직 평가하기 어려움	1(7.7)
	홍보효과 미미함	3(15.3)
	계	13(100.0)
지역사회자원동원	결연 및 연계 증가	8(72.7)
	자원동원 어려움	3(27.3)
	계	11(100.0)

마. 사회적기업의 강점

1)

(1)

,

.

, 20% , ,

,

. 17%

,

,

.

,

.

,

.

〈표 5-2-25〉 사업 운영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이점

(: , %)

	빈도(%)
직원들의 높은 주인의식	4(22.2)
사업 및 의사결정의 자율성	3(16.7)
이용자 확보 용이	3(16.7)
사회적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3(16.7)
다양한 재정 지원	3(16.7)
기타	2(11.0)
계	18(100.0)

직원들의 높은 주인의식

"내가 아닌 우리가 만들어가는 부분에 수익성은 높지 않지만 이용자를 확보하는 부분에서는 강점이 됨. 예산은 수익을 내서 만들어 내는 부분과 근로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부분이 있어 일반기업보다는 주인의식이나 애사심이 높음."

"직원들의 자발성에 의한 운영이 가능함. 수익금에 대한 결정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자세만 되어 있다면 직원 복리도 강화할 수 있음."

사업 및 의사결정의 자율성

"짜여진 지원의 한계를 벗어나 사업의 자율성 확보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음."

"사업진행의 의사결정이 빠르고 자유로워짐."

이용자 확보 용이

"참여자의 인건비 및 기관부담 보험료 지원, 다양한 수익 창출에 대한 접근으로 수익성 확보 및 이용자 확보가 용이함."

사회적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좋은 일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고용을 창출하고 서비스를 되돌려주는 기업이라는 좋은 기업 이미지를 가진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이로 인해 대기업과 연계가 용이해서 지원금을 확보하고, 이용자 확보에도 용이함. 이용자 확보가 사회적기업이 되기 이전보다 용이해서 수익성도 사회적기업 이전보다는 상향되었음."

다양한 재정지원

"전문인력과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발비 확보 등으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었음. 그러나 홍보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음."

"사회적기업으로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분야가 많으므로 기업의 기초를 다지고 발전을 꾀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였음."

(2)

82%

, .

.

, ,

.

, ,

.

,

.

〈표 5-2-26〉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이점

(: , %)

	빈도(%)
높은 수준의 서비스 품질	14(82.4)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3(17.6)
계	17(100.0)

높은 수준의 서비스 품질

"참여자의 가치관, 자발성이 강조되므로 생산품에 대한 책임의식 및 품질 향상이 가능함."

"우리라는 관점에서 친환경적인 것을 더 찾게 되고 만들게 되므로 질적으로의 품질이 좋음."

"주인정신을 가지고 내 회사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참여하므로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장기근속자가 많아서 서비스가 안정되고 자기일 같이 열심히 일함."

"사회적기업이 되고난 이후로는 우리 기업 스스로도 기업의 신뢰와 사회적기업의 이미지를 잘 지켜나가고자 직원 교육과 서비스 교육을 더 강화했으므로 결과적으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됨."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다양화,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품질 개선 및 향상에 노력함."

"이용자별 요구에 대응하는 개별서비스가 가능해짐."

2)

. 1/3

.

,

.

,

.

,

, , ,

.

〈표 5-2-27〉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차별화

(: , %)

	빈도(%)
자치적인 기업운영	6(30.0)
취약계층의 고용 및 서비스제공	5(25.0)
사회공헌과 수익창출을 위한 기업경영 마인드 겸비	4(20.0)
기타	5(25.0)
계	20(100.0)

자치적인 기업운영

"사회적기업은 운영에 근로자와 운영책임자, 운영위원(이사) 등의 상호협력과 지지가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보다 더 강조되어지고 중요하다고 봄."

"참여자가 기업에 대한 주인의식으로 스스로 업무, 경영 등 기업의 발전에 참여해야 함."

"모든 근로자와 참여자가 기관의 주인으로 인정받아야 함. 이를 위해서는 조직이 상하로 이루어진 체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수평 체제를 이루어야 함. 같은 출발점에 서서 뒤쳐지는 사람이 있으면 앞에서 이끌어 주고 해서 모두가 다함께 결승점에 설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함."

"사회적기업은 일반 시장에서 일반 기업들과 가격, 품질 등으로 직접적인 경쟁을 하여 사업수익을 내고 자립기반을 확충해야 하며, 시장경쟁에 밀려 사업수익을 내지 못했을 때 사회적기업은 전적으로 해당 기업이 책임지지만, 사회복지기관은 모 법인이 책임지는 데 차이가 있음."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은 서비스 대상자에게 1차적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 사회적기업은 기업전략에 따라 자치 운영 및 일하는 사람에게도 서비스 이용자만큼의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함. 기존 사회복지기관은 비영리법인에 의한 무소유를 원칙으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법인자체가 소유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운영과

소유를 경영자와 근로자가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취약계층의 고용 및 서비스 제공

"임금문제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문화 복지 고용에 대한 복리가 여타 복지기관보다는 더 우수해야 하며, 현장 직원에 대한 좋은 처우가 좋은 서비스로 연결되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경쟁력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지역사회 내 협력과 파트너쉽도 더욱 전문적으로 발현해야 함."

"사회적기업의 취지는 취약계층, 소외계층을 사업의 참여자로 하지만 참여자 또한 서비스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보다 쌍방 소통이 원활하다고 할 수 있음."

사회공헌과 수익창출을 위한 기업경영마인드

"타 사회복지기관과는 달리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업경영도 같이 수행해야 함."

바. 사회적기업의 단점

1)

, ,

,

.

,

.

,

.

, ( )

.

,

,

, .

, ,

.

4 .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독립적 조직으로서 재정적 자립을 해야 한다는 사실, 이를 위해 시장 내 경쟁력 있는 영리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의 어려움. 경쟁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역량있는 영리기업과의 시장경쟁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익까지 내야하는 상황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임."

"사회적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원 중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취약계층 직원들은 일반인보다는 작업수행 능력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직원 채용 이후에도 적게는 3~7일정도의 교육기간과 적응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 매출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감내하면서 기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임."

"취약계층을 일정비율이상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애로점을 겪을 때가 많음. 베이비시터의 경우, 나이와 학력을 중요시하는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시행 지침과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함."

영리추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기업의 나쁜 이미지 즉, 더 많은 영리를 추구하는 자산가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인식이 있어 비영리활동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상법상 회사로 영리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후원금 조달의 어려움이 있음."

사회적기업에 대한 규제

"행정기관의 통제와 지시가 타 기업에 비해 심하다는 것임. 또한 사회

적기업의 규제, 규칙이 실제 경영과정에서 장애가 되기도 함. 자신의 임무를 행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가 없는 근로자도 권고사직 할 수 없다는 점이 대표적인 예임."

"부득이하게 고용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도(무단결근이라든지) 고용조정을 할 수 없음."

2)

( )

, ,

.

,

.

, 90%

.

,

,

.

,

.

3 .

미약한 수익구조

"사회복지영역의 사업은 수익률이 매우 낮은 업종으로 업종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사업수익을 내기 좀처럼 힘든 상황임(손익구조 열악->근로조건 열악->우수인재 유출(유입차단)->사업위기의 악순환 반복)."

"사회적기업의 수익창출은 기존 기업의 이익극대화 추구가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운영, 근로자 모두를 고려한 수익창출이어야 함. 그러므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때로는 포기해야 하고, 돈을 적게 벌게 되는 서비스이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다른 곳이 하지 않는 것이면 지속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함. 기존 사회복지기관은 운영비, 인건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지만 사회적기업의 돌봄서비스는 대체로 이용자 가정의 비용부담을 통한 수입으로 운영과 인건비 지출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우리 기관은 사회서비스도 무료로 취약계층에게 30%이상 제공해야만 사회적기업을 유지할 수 있음. 이 의무사항을 준수하고자 하면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서비스 제공이 진행되고, 직원 급여도 일반직원과 같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매출의 손실이 발생함. 이러한 부분을 감내하고 사회적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임."

"수가가 매우 열악하며, 매출의 90%이상이 인건비여서 비용절감을 통해 안정운영을 도모할 수 없으므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함."

복지기관과의 혼동

"일반 시민들이 복지기관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기업이 왜 무료로 봉사해야지 수익사업을 하냐는 식의 반응이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저가 서비스요구 등이 너무 많음."

"기업의 나쁜 이미지 즉, 더 많은 영리를 추구하고, 자산가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활동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기타

"서비스는 눈에 보이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치평가가 불분명하고 이 때문에 지자체나 노동부의 자체 점검이나 지도 등에서는 존재가 불분명함."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기업단체간 네트워크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음."

사. 사회적기업가의 차별성

1) · ·

, , ,

, ,

.

.

.

사회복지적 가치

"콩 한쪽도 나눌 줄 아는 마음과 Win-Win 경영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경영 노하우나 업적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공유한다면 그 성과는 무한정이 될 수 있음."

"기업가에게 이윤은 포기할 수 없는 부문이지만 이윤을 우선으로 두기보다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기업가의 자질도 중요하나, 조직의 구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더욱 중요하고 그들에게 통제를 받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기업은 이윤추구가 주목적이라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복지를 위한 기업이므로 이윤추구 이전에 복지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의식이 필요함. 이런 차원에서 자신이 이끌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참여자와 함께 성장하고 사회적 봉사와 헌신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경영적 가치

"사회혁신 아이디어, 흔들림 없는 도덕성,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 공유가 중요한 덕목임."

"혁신성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는 기회와 도전과정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함. 지역사회의 문제를 기업경영을 통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기업경영능력 등이 중요함."

사회복지적 가치와 경영적 가치의 조화

"사회적 경제원리를 도입하고 조직체계에서 기업화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사회적기업에서 창출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항상 공공재라는 생각을 하여야 함. 그리고 지역 기업에 대한 고민, 지역사회 고용에 대한 고민을 놓치 말아야 함. 기업의 사명과 가치, 중장기 활동목적에 대해서 관리자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인력 모두와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한 조직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함."

"희생과 봉사정신의 기반위에 사업가로서의 판단력과 진취적인 사고, 저돌적인 추진력이 겸비되어야 함."

"사회적기업에 대한 명확한 미션 인식, 기업의 협력적 운영, 업종의 사회적 가치의 실현 추구, 민주적 의사소통, 회계 등 운영을 위한 기본적 행정 이해 및 학습이 필요함. 또한 지역 자원 연계 추구, 지역네트워크 참여 등 지역(마을)을 사회통합적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미래지향적인 의식을 가지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빠르게 움직여야하며, 사업을 이끌어가는데 진취적인 기상이 보여야 함. 또한 도덕적인 인품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2)

10 7.1 .

21 15

, 6

.

〈표 5-2-28〉 사회적기업 직원의 자부심 체감도

점수	빈도(%)	점수	빈도(%)
10점	2 (9.5)	6점	3 (14.3)
8,5점	2 (9.5)	5점	1 (4.8)
8점	8 (38.1)	4점	1 (4.8)
7점	3 (14.3)	0점	1 (4.8)
평균		7.1	

10 . 21

,

,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라는 인식

"사회적기업이 된 이후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고 사회적으로도 방송이나 신문 등에 알려져 직원 스스로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함. 자신이 단순히 일만하면서 돈 버는 곳이 아니라 이 기업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지역사회에도 기여하고 봉사하는 성향을 같이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경영자가 사회적 가치 및 목적에 대한 계속적인 공유와 실천을 통해 '무엇인가 좋은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함(사회적가치에 대한 공유와 경영자의 실천)."

"이를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자기 조직에 대한 사명과 가치의 공유, 직장 내 소모임 지원 등 기업과 근로자를 관계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음."

직원들의 민주적 참여 및 공동체 의식

"일반 사회복지기관이나 기업과는 달리 본인들이 서로 논의하고 협력하여 일하는 분위기, 새로운 가치를 구체적인 일감으로 구현시킬 수 있다는 점, 맡겨진 일만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점,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지는 점 등 함께 운영해나간다는 것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낌."

"민주적 의사 결정 및 모두가 기업의 주인이 되는 사회적기업에 매력을 느끼기 때문임."

"회사의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직원들의 특이사항에 대해 회사와 공유함에 따라, ... 내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 또한 이익잉여금의 처분 규정도 두고 있어 회사가 성장하면 나도 성장한다는 신뢰를 가짐. 소모임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자신감 회복과 성취감을 향상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회사이므로 누구보다 자부심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음."

인증 자체가 갖는 힘

"인증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업으로서 같은 직종의 타사보다 자부심을 갖는다고 생각함."

"희미하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브랜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

, .

"사회적기업 인증 전이나 후에나 직원들이 느끼는 처우등의 개선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자부심을 느끼기 어려움."

"최저임금으로 인한 노동의 대가 만족도 저조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근무 불안 때문에 자부심을 느낄 수 없음."

"사회적기업의 뜻이 공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복지라는 차원에서 돕고 있다고 여겨서 자부심 보다는 내 자신이 어려운 이웃에 포함된 계층에 포함되어 버렸나.. 하고 사회적기업이라는 표현하기를 꺼리기까지 함."

아. 기업에서의 의사결정 구조

1)

(1)

. , - -

.

,

, ,

. , , ,

,

. ,

.

.

19 〈

5-2-29〉 .

〈표 5-2-29〉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 과정 유형

	빈도(%)
하위 조직(체계)에서 상위 조직(체계)으로의 위계적 의사결정	3 (15.8)
의안 수준에 따른 참여 주체별 의사결정	4 (21.0)
실무자 및 임원 등 기업 내부 회의를 통한 단일 의사결정	6 (31.6)
운영위원회,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조직을 통한 단일 의사결정	6 (31.6)
계	19[1](100.0)

: 21 2

(2)

.

. , ,

,

.

, ,

,

,

.

의사결정의 내용과 수준에 따른 의사결정 주체별 논의

"1년에 1회 총회가 있고, 연 4회 개최되는 이사회(새로운 지점의 증감과 전반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결의), 2주에 1번 실시되는 실무자회의(대표이사와 본부장, 법인 팀장과 각 지점 센터장 등 실제 실무자를 위주로 월 매출 현황 보고와 고객 증대방안, 평가 대비 등 현안 논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운영위원회에서는 외부전문가,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최고의사결정구조를 가짐. 큰 틀에서의 운영에 대해 결정함. 교사회는 근로자인 교사들의 회의체로 실제 운영에 대한 모든 논의가 이루어짐."

단일 체계에서의 기업 운영 전반에 관한 논의

"현장 근로자 중심의 운영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여기서 논의된 안건을 반영하여 기업경영에 활용하고 있음."

"시설장, 사외이사 2명, 조합원 6명, 비조합원 1명, 감사 1명, 노동조합 대표 1명으로 구성된 이사진들이 이사회를 열어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

분, 근로자의 채용 및 배치, 교육훈련, 임금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함. 모든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됨."

2)

21 15

, 6

.

.

〈표 5-2-30〉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 운영 여부

		빈도(%)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 운영 여부	운영하고 있음	15 (71.4)
	운영하지 않음	6 (28.6)
계		21 (100.0)

, ,

, ,

.

,

.

15

1/3

2 . ,

70% .

,

.

,

.

〈표 5-2-31〉 의사결정구조의 구성

(: %)

	전체	의사결정구조 주체 수				
	(n=15)	2개(n=5)	3개(n=1)	4개(n=5)	5개(n=3)	6개(n=1)
직원	40.5	70.2	25.0	25.4	30.0	20.0
서비스이용자	10.7	5.2	-	16.8	13.3	10.0
자원봉사자	3.7	-	-	7.0	3.3	10.0
민간기업	5.4	-	25.0	5.0	6.7	10.0
정부·지자체	2.9	-	-	2.5	10.0	-
지역사회주민	11.1	-	-	17.0	16.7	30.0
지역유관기관	25.6	24.6	50.0	26.3	20.0	2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

, ,

,

.

〈표 5-2-32〉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지역주민의 참여 방식

	빈도(%)
운영위원 및 이사 위촉	13 (61.9)
수익사업 외의 별도 프로그램 및 행사 등 운영	4 (19.0)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3 (14.3)
별도의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닌, 사안별로 연계	1 (4.8)
계	21[1)](100.0)

: 17 , (3) .

4)

1~2 , 1~2 ,
3~4 .
3
.
.
1~2 ,
, ,
.
1~2 ·
, , ,
.
3~4 ,
, ,
.

〈 5-2-33〉 .

〈표 5-2-33〉 사회적기업 내 회의 빈도별 주요 안건

회의빈도	빈도(%)	주요 안건
주1~2회 이상	9 (42.9)	• • , , • , • , , • • • , •
월1~2회	7 (33.3)	• , , , • .

회의빈도	빈도(%)	주요 안건
		● , ● , , , , , ● ●
연3~4회	2 (9.5)	● ● / ● , ●
회의체별 회의 빈도 상이	3 (14.3)	●
계	21 (100.0)	-

5)

.

,

.

,

,

.

,

.

2

.

〈표 5-2-34〉 일반 사회복지기관과의 차별성 있는 의사결정의 실현 방법

	빈도(%)
다양한 주체의 회의체 구성 및 활성화	4(25.0)
수평적·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	3(18.8)
근로자의 의사결정 참여	3(18.8)
빠른 의사결정 구조 마련	1(6.3)
근로자 주체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중요성 인식	1(6.3)
근로자와의 합리적 소통 구조 마련	1(6.3)
관리자의 책임성·자율성 강조	1(6.3)
차별성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않음	2(12.5)
계	16[1](100.0)

: 15 , (1) .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 권한은 자본의 소유에 근거하지 않으며, 사회적기업의 참여자, 수혜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됨."

"근로자가 주최가 된 의사결정구조가 중요하게 인식되어져야 함. 이러한 의사결정구조가 사회적기업에서 형식적인 틀이 아니라 실제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운영자의 운영 지향점이 명확해야 하고, 근로자의 관심과 헌신, 책임성이 중요함. 특히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전체적인 사회적기업 운영에 대한 미션보다는 근로자 개개인의 이익추구가 우선될 수도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느리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일터가 될 수 있다고 봄."

"사회적기업은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자립이 가능하려면, 빠른 의사결정구조도 중요함. 따라서, 권한과 역량있는 의사결정기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

"사회적기업이라서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기관의 특성에 맞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됨."

자. 사회적기업 경영관련 애로사항

1)

,

.

,

.

, , .

.

.

.

,

경영 관련 전문 지식의 부족

"일반 기업 경영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홍보, 마케팅이 어려움."

"사회적기업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인사, 노무, 마케팅 등에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답을 얻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됨."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의 구조적 한계

"사회적기업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여, 저렴한 가격만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많음. 이에 공공의 이익과 수익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만 하는 사회적기업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함."

"상법상 회사로서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인식의 부족으로 영리업체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사회 내 이용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종종 있음."

"기존 복지기관의 경우 관리직사원 인건비 등 보조금 지급이 되는 상황에서 운영하지만 사회적기업의 경우 자체 매출로 전체 운영경비를 조달해야 하므로 한계가 있음."

"이직율이 높은 편이므로 업무의 일관성, 장기적 계획이 어려움."

"수익창출을 강요당하는 현실, 열악한 처우로 인해 우수인재 유입이 차단되거나 우수인재가 유출되는 현상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음."

2)

.

,

.

,

.

, , ,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취약한 수익구조

"영리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이 요구되는 시장 환경, 필요이상의 도덕성 및 사회적 기여에 대한 요구가 공존하고 있어 어려움."

"일반기업과 경쟁해서 수익을 내야하고, 그 수익금으로 사업운영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및 사업비 등을 충당해야하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에는 기본 자금(시드머니)이 부족함."

"낮은 임금과 사회적기업의 불분명한 미래, 사업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 및 인식의 한계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의 부족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 사회적기업가 및 임직원들의 사회적기업가 마인드 부족이 어려움의 근원이라 할 수 있음."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일반 근로자들보다 많이 부족한 편이며,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지가 약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인건비 지원 기간이 제한되어 어려운 점이 많음."

차. 수입·지출 구조

1) 3

3 19

〈 5-2-35〉 . 2008 2009
, 12 10 2 4
, 2 13
. 2 , 1
1 4 .

〈표 5-2-35〉 수익 변화 형태에 따른 증감 비교

(:)

		증가	증가(적자)	유지	감소	감소(적자)	총계
2008 - 2009[1)]	빈도(%)	10(83.3)	-	-	1(8.3)	1(8.3)	12(100.0)
	증감폭 평균	240	-	-	-12	-142	187
	최소값	20	-	-	-	-	-142
	최대값	1300	-	-	-	-	1300
2009 - 2010	빈도(%)	10(52.6)	-	-	4(21.1)	5(26.3)	19(100.0)
	증감폭 평균	88	-	-	-149	-173	-30
	최소값	2	-	-	-45	-12	-370
	최대값	246	-	-	-200	-370	246
2008 - 2010[1)]	빈도(%)	7(58.3)	1(8.3)	1(8.3)	-	3(25.0)	12(100.0)
	증감폭 평균	295	12	0	-	-85	152
	최소값	60	-	-	-	-24	-170
	최대값	1100	-	-	-	-170	1100

: 19 2009 5 , 2008 2 12
.

2009 2009 2010
, 2008-2009
. 2009
2010 5 12 3 7
. 4
, 2 .
2008-2009 2009-2010
, 2 2 5
.

2008 2010 3

, 7 , 2008-2009

3 . 4

, 1

. 2008-2009 ,

.

.

2010

〈 5-2-36〉 .

〈표 5-2-36〉 수익 규모에 따른 수익 비교(2010년 기준)

(: , %,)

수익 구분		해당 기업수	평균 수익	사업내용
수익	10억 이상	2 (10.5)	2600.0	(1), (1)
	5억 이상-10억 미만	1 (5.3)	500.0	
	1억 이상-5억 미만	8 (42.1)	235.8	(3), (3), (1), · (1)
	1억 미만	3 (15.8)	87.7	(1), (1), (1)
적자	1억 미만	4 (21.1)	-38.5	· (1), · (1), (1), (1)
	1억 이상	1 (5.3)	-210.0	· ·
계		19 (100.0)	393.9	-

70% .

1 ~5 2 3

, 1 88

. 10 26

.

26% , 1

3 8 , 2

1 .

,

.

.

2)

.

, , .

.

, ,

, .

.

.

〈표 5-2-37〉 수익의 운용 및 재투자 내역

	빈도(%)		빈도(%)
직원 인센티브	13 (18.8)	교육훈련	4 (5.8)
직원 인건비(초과수당 포함)	12 (17.4)	적립금	3 (4.3)
사무실 운영	9 (13.0)	직원복리후생	2 (2.9)
홍보	7 (10.1)	사회공헌	2 (2.9)
사무실임대 및 차량·설비 구입	7 (10.1)	컨설팅, 시장조사	2 (2.9)
사업운영 및 사업확장	6 (8.7)	부채 및 누적손실금 처리	2 (2.9)
계		69[1](100.0)	

: 20 .

3)

,

4 . ,

. , , ,

. ,

. ,

, ,

. 3

. .

높은 인건비 지출 비중으로 인한 운영·재투자의 곤란

우리 기관의 경우, 수익금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운영경비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되므로 수익금을 더 많이 생성시키는 사업모델 개발이 시급함.

수익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어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가 어려움, 2012년 6월 사회적기업 지원 만료 후 자립 방안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지마련에 따른 재정이 넉넉하지 못함.

인건비 비중이 커서 수입에 변동이 있으면 인건비 비중이 확대되어 재정운영이 바로 취약해짐.

정부지원 중단으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

회사 수익의 대부분은 급여와 퇴직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사운영을 국가의 지원금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국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운영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됨.

자본금 부족,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부담. 인건비지원 중단으로 인한 부담이 큰 실정임.

열악한 수익구조, 수익창출의 어려움

비제도권 돌봄서비스 분야의 경우, 사업분야 자체가 수익률이 매우 낮은 영역임. 이 분야의 혁신적 사업모델이 창출되지 않는 이상 재정적

어려움은 계속될 것인데, 그렇다고 사업을 포기하여 사회적 문제를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매우 고민됨.

재정 운용 관련 전문성 부족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임.

법인세 신고시 회계담당자의 판단하에 결정하여 신고하고 있으나, 회계서류를 검토해 줄 수 있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함.

카. 품질 관리

1)

. ,

,

. ,

. ,

.

ISO9000

.

,

,

.

.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교육 시행

"돌봄 서비스는 사람의 성장이 곧 서비스의 품질 향상임. 그러므로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함. 외부교사교육 지원, 내부교사교육의 상시화, 교사회의를 통한 자체평가와 개선점 찾기 등을 실시함."

"월 1회 이상 직원 보수교육 실시 및 정기회의 개최가 이루어짐."

"연간 교육 계획을 세워 양질의 교육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를 질적으로 높이고 있음."

"종사자의 업무향상교육, 안전관리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개선 및 자기개발 지원

"재직근로자 직무교육, 임금 등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과 직장 내 소모임 활동지원, 직원대표자 리더십개발 등을 실시하고 있음."

"교사들의 자기 성장과 업무 수행상의 공동체성 강화, 가정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노력하고 있음."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서비스 수혜자들과 유관단체들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함."

"이용위원회 운영을 통해 서비스만족도, 직원만족도를 조사, 반영함."

"담당 실무자들이 현장에 직접 방문, 월1회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서비스제공인력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 고충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ISO9000 지속 인증을 시도함."

"올해 한국서비스품질인증을 받을 예정임."

기타

"기업 내부적으로 운영 매뉴얼을 체계화 함."

"수혜자 및 보호자의 클레임에 대해 귀담아 듣고 시정사안에 대해 개선하고자 노력하며, 수혜자분들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배치함."

"복리욕구를 높이기 위해 복지기관에 준하는 각종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전문인력 투입, 전문 강사의 채용으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제품 개발과

홍보에 노력함."

2)

,

,

.

,

. ,

,

. ,

,

. ,

. -

.

.

,

.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기관에 대한 연대의식과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동기 부여 교육과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함."

"지속적인 직무교육이 가능한 여건 마련,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보전 방법이나 교육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필요함."

"종사자의 해당서비스에 관련된 실질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

요청됨."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노동강도에 맞는 임금과 고객 사정에 의한 서비스중단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임금 등 처우수준 향상이 필수적임."

사회적기업 및 서비스 제공 인력의 인식 제고

"수혜자와 요양보호사라는 이해관계를 떠나서 내 부모를 모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이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정신도 뒷받침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때 품질은 향상된다고 생각됨."

"근로자의 서비스 마인드 제고가 필요함."

제공 서비스의 표준화 및 연계시스템 구축

"서비스 표준화가 필요함"

"민간서비스와 공공서비스가 연계된 통합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에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되도록 해야 함."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유관기업과 연계한 서비스의 다양화가 요청됨."

기타

"고객 및 직원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고객과 직원의 고충을 바로 파악하여 서비스 제공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함."

타. 사회복지서비스 인력 관리관련 애로사항

1) **,**

. , ,

, , , ,

. .

,

, ,

.

. 1

,

.

2 .

열악한 근로조건, 일자리의 불안정성

"사회복지서비스는 사람이 직접 대면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라 힘이 드는데, 급여를 넉넉히 줄 수 없는 재정형편이어서 사회봉사의 마인드로 일할 인력이 필요하지만, 구하기가 어려움. 또한 박봉을 견디지 못해 자주 이직하는 편이고 새로 채용하면 다시 신입 직원 교육을 실시해야 하므로 행정력도 낭비되는 경향이 있음."

"보육이라는 일의 특성상 일정한 자격,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나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토요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구인이 어렵고 퇴사하는 경우가 있음."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인이 교육은 많이 받지만 실제로는 격무이므로 건강상의 이유, 자존감 상실 등의 이유로 이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함."

"요양보호사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바로바로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취업을 했다하더라도 적은 급여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이직하는 경우도 많음. 대다수가 상근직인 주간보호센터는 다행이지만 시급제가 대다수인 방문요양은 구직이 어려움.

"불안정한 일자리는 대단히 유연한 고용관계를 만들며, 근로자 역시 대단히 유연하게 이직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1년 계약직 근무조건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자가 다수임."

낮은 사회적 인식

"사회인식의 부족과 함께 노동강도가 높아 근로자들의 자존감이 낮음."

"낮은 수가가 주원인일 수는 있으나 수가보다는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구인구직 시스템, 여건의 미비

"원칙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구인활동은 공식체계(워크넷)를 활용할 수 없음. 채용 후 서비스를 제공할 곳과의 계약서를 요구하는데 불가능한 일임. 돌봄사회서비스를 특화한 구인/구직 시스템이 필요함."

"인턴제도 같은 것이 필요함. 기관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기관의 미션에 동의하는지, 돌봄의 경우 아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 업무에 적성이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봄."

"농촌지역의 특성상 구인이 어려움."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증이 시험제도로 변경되면서 자격취득자가 줄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구직자를 찾기 힘듦."

2) **,**

(1)

.

,

.

1 9

,

,

"장년층 이상 인력 구성으로 인한 교육을 통한 목적 달성의 지연"

"베이비시터는 대부분 50-60대로 가장 적합 직종이나 꾸준한 교육이 필요함. 가정베이비시터가 1일 9시간-10시간(주 최소 45시간-50시간) 근무로 준고령자 체력과 구인조건에 불일치함."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므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고령자 및 저학력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반복교육을 해도 이해력이 많이 떨어져 업무진행이 어려움."

"사회 취약계층을 고용하다 보면 인력의 자질면에서 일반인보다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신입사원 교육(최소 1~3일간 이론교육과 실습 병행)과 재직자 교육(월 1회 지점별로 실시)을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음."

"사회적기업은 대표자 뿐만 아니라 기업 내 모든 직원들이 사회적기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나, 실제 경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직원들이 사회적기업의 마인드를 갖기가 어려워 의견이 대립되고 그로 인해 불만이 쌓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2)

교육의 필요성

"현장인력에 대하여 밀착 관리를 통해 단체 프로그램 및 보수교육 등이 강화되어야 자존감과 사명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것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바우처 결제 오류 등 실시간 발생하는 단말기 사용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함."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면 좋겠음."

실무 관련 교육의 부족

"현업에 적용하는 교육훈련이 미흡함, 재직 중 교육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함"

"교육은 신입부터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내부강사로만 실행하고 있어 좀 더 폭넓고 다양한 교육이 필요함."

"현 서비스와 관련한 교육이 부족하고 교육을 위탁 의뢰할 기관도 부족함."

교육을 위한 시간적 제약

"정기 월례회의 및 고용환급과정 교육훈련을 꾸준히 하고 있으나 참여자의 2/3 이상이 가정파견이라 교육 시간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따름."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경우 사회복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필요함. 이에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나, 시간의 제약이 많아 타 근로자들보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모자란 편임."

3)

,

. ,

. ,

.

, ,

.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원

"자체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도 필요함. 특히 보육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시간을 내어 외부교육을 받으러 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대학 4학년 등 예비 졸업생 중에서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1년 인턴으로 근무해보도록 하는 제도도 좋을듯함."

"일반인 취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만 지원되어도 되지만,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직장 생활에 적임자로 교육,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재원이 필요함. 또한 교육기간에는 실제 업무에 투입이 어렵지만 급여는 지급되어야하므로 취업취약계층이 취업된 경우에는 그 인원에 상응한 교육, 훈련비도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임."

인건비 지원

"돌봄의 경우 상근자 인건비에 많은 부담이 있음. 최소의 인원이라도 신입이 아닌 기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5년 지원 후에도 취약계층 비율에 맞추어 추가 지원이 필요함. 돌봄은 4대 보험과 적법한 노동 수준을 유지하자면 수입만으로 유지가 안됨."

"돌봄서비스 사업체의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의 지원이 없으면 사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음. 간병료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최저임금 인상, 교대근무에 의한 연장, 야간수당, 4대 보험, 퇴직금, 사무실직원임금, 운영비, 연차 및 복리후생비 등의 추가 지출을 감당하기가 힘듦."

"정부가 현재와 같은 낮은 수가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면,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에는 적어도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필요할

것임. 그래야 현실 수가 내에서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신사업 개발 및 시급인상 등 현실적인 발전방안을 내기에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답은 관리인력 인건비 지원에 있다고 생각함."

"저임금 인력을 다수 고용해야 하는 사회서비스현장의 여건으로 볼 때 사회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임. 적어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은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데 비용을 쓸 수 있는 기회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회보험의 기간 제한 없는 지속적 지원이 요청됨."

전문인력 지원

"전문 인력 지원의 조건을 실무능력에 의한 융통성있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문인력 임금지원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관에서 정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지원 종류 후에도 사용기관에 그대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절실함."

기타

"워크넷이 있으나 인력풀이 적고 실업수당을 받기위한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도 노무관리가 필요함."

"주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는데 취약계층 직원을 찾기가 어려움. 취약계층이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연계해 주는 지원이 필요함."

06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의 개선과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업을 중심으로

Ⅵ.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의 개선 과제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업을 중심으로

1.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의 특성과 문제점

가. 사회적기업의 제도화 배경

.

. . .

1990

.

.

,

,

2003 ‘ ’

. “

’’ . ‘ ’

’

. ‘

’

.

‘ ’

’

.

. 2005

‘ ’

‘ ’ .

.

.

나.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의 특성

.

.

’

. 〈 6-1-1〉

,

.

〈표 6-1-1〉 사회적기업의 인증 조건

조건	내용	조항
조직형태	• , • : 1) 「 · 」 2) 「 」 3) 「 」 4) 「 」 5)	8 , 8
유급근로자 고용	• ·	8
사회적 목적 실현	• 1) : 50%(: 2008 30%) 2) : 50%(: 2008 30%) 3) : 30%(: 2008 20%) 4) : ,	8 , 9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 ,	8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6 30/100	8 10
정관이나 규약을 갖출 것	• · , , 2/3	8, 9 11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 사용	• 2/3	8

: ‘ ’2007.7.

.

, , ,

, .

〈표 6-1-2〉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지원정책 내용

지원형태	지원내용	조항
경영 지원	/ / / /	10
교육훈련 지원	/	10 2
시설비등의 지원	/ / /	11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12
조세 감면 사회보험료 지원	/	13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 /	14
연계기업의 조세 감면		1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	/	20

: ‘ ’2007.7.

2011 ‘ ’

.

.

,

.

.

〈표 6-1-3〉 최근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Ⅰ.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1. 자금조달 경로 확충		
(,)	‘11 2/4	
	‘11 2/4	
	‘11 2/4	
	‘11 4/4	
	‘11 4/4	
2. 공공시장 진출 확대		
	‘11 4/4	
	‘12 1/4	
	‘11 2/4	
	‘11 4/4	
	‘11 3/4	
3. 경영 · 창업지원 강화		
	‘11 4/4	
	‘11 3/4	
·	‘11 4/4	
· ·	‘11 3/4	
· · ·	‘11 3/4	
	‘11 3/4	
4. 투명성 · 책임성 강화		
	‘11 4/4	
	‘11 4/4	
	‘12	
	‘11 4/4	
Ⅱ. 사회적기업 확산		
1.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11 3/4	
1 1	‘11 3/4	
2. 중앙 · 지역단위 사회적기업 확산 지원		
	‘11 3/4	
	‘11 3/4	
NGO· ·	‘11 2/4	
·	‘11 4/4	
	‘11 4/4	

: , (2011. 6)

,

,

,

.

,

.

다.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

,

.

,

.

.

,

,

.

,

.

2.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 사회적기업의 전망

가.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

나. 복지혼합 체제 속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

(welfare mix)

.

.

.

.

.

,

.

(welfare

mix)

,

.

.

6 24) .

,

.

24) 6 DW(Diakonisches Werk), DCV(Deutcher Caritasverband), DRK(Deutschen Roten Kruez), AWO(Arbeiterwohlfahrt), DPWV(Der Paritätische) ZWST(Zentralwohlfahrtsstelle der Juden in Deutschland) .

,

.

.

,

.

,

.

,

.

,

.

B

, ,

.

〔그림 6-2-1〕 유럽 4개국의 복지혼합(노인돌봄영역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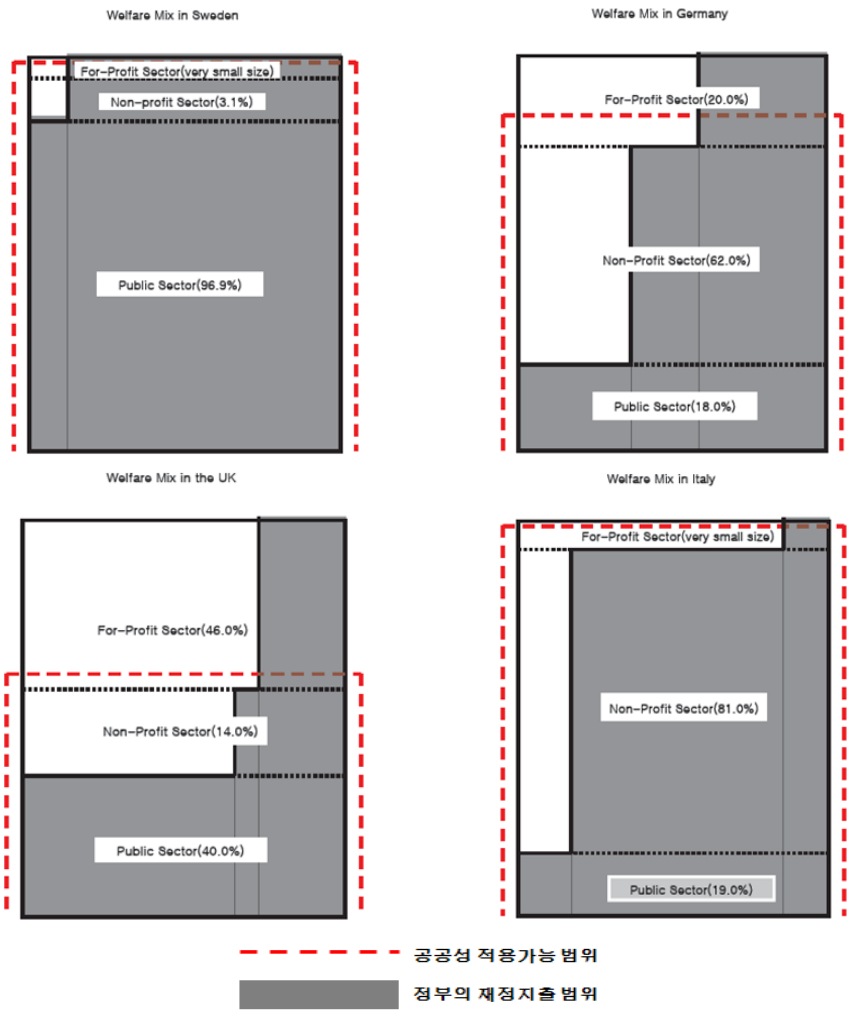

: (2009)

다.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특성

,

,

(, 2010, 2011).

,

.

(co-production)

.

,

.

,

.

.

.

, , ,

,

.

, ,

,

.

〔그림 6-2-2〕 사회적기업과 복지체제의 삼각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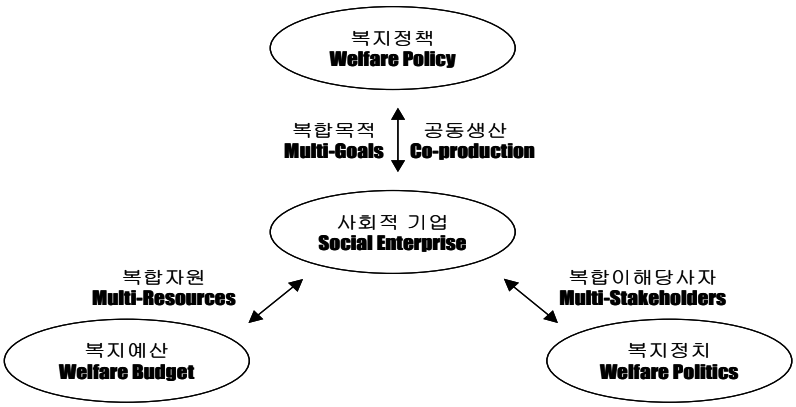

: (2009)

3.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과제

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 목표 설정

.

,

.

.

.

〔그림 6-3-1〕 한국의 사회서비스체제 변화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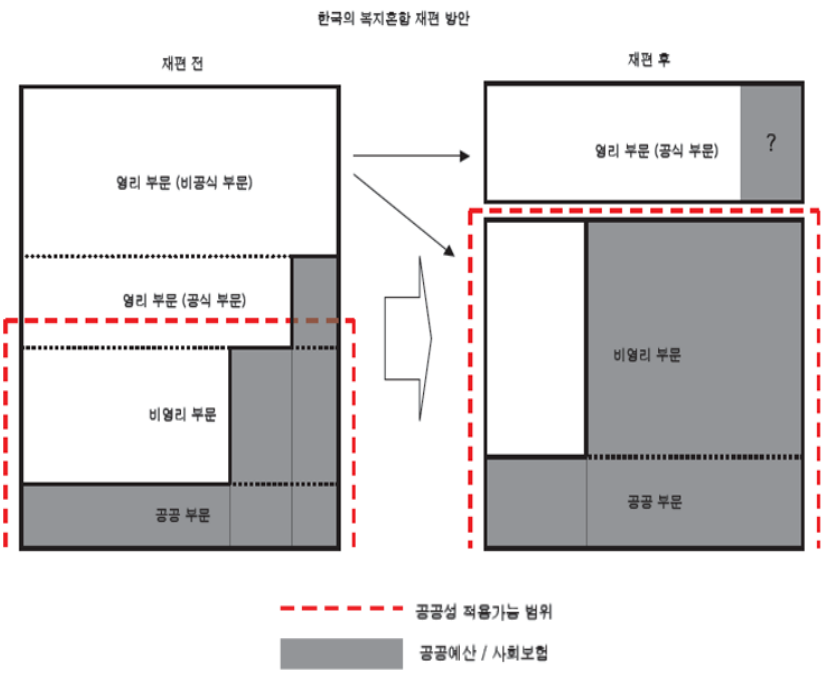

: (2009)

나.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적절한 법인격의 인정

‘ ’

’

. ’

’

.

.

’

.

’

.

’

. ’

. 1 1

.

.

,

.

.

.

.

.

,

.

다.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적기업의 제도적 지원 환경 조성

.

,

. , ,

,

.

(,

2010).

.

.

.

. ,

.

,

,

.

(the Best Value)

.

.

, ,

.

2/3

.

.

. , , ,

.

.

,

.

4.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현실과 세부 과제

‘ ’

. ,

EMES , ,

, ,

, ,

, , ,

(Defourny, 2001). ,

.

.

,

.

가. 사회적기업의 차별성 및 강점: 인식과 정체성

□

○

.

,

.

— ,

—

—

나. 사회적기업 운영상의 어려움과 제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문헌

(2009). . 사회적기업연구, 11, 38-39.

(2009). 07 . 사회적기업연구, 2(1), 37-65.

, (2010). 사회적기업 3주년 성과분석. .

(2011). ( ) .

, (2010). . 한국거버넌스 2010년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115-134.

(2006). 사회적기업 재원조달 방안 수립 및 외국사례 연구. .

(2009). . 사회복지정책, 36(2), 139-166.

(2010).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연구: 다중이해당사자 참여를 중심으로. .

(2009). . 사회적기업연구, 2(1), 67-99.

(2010). . 한국도시행정학회, 23(1), 47-68.

(2010). 사회적기업의 거버넌스에 관한 주요국가 비교연구. .

, , (2010). :

. **창조와 혁신,** 2, 129-173.

(2008). . **보건복지포럼**, 138, 62-85.

(2008). **사회적기업 지역 실태조사**. .

, (2003).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

(2002). **세무회계 실무백과**. .

(2009). **사회서비스인력 선진화 방안연구.** .

(2010). . **국토,** 348, 35-46.

(2010). . **한국로고스경영연구,** 8(1), 1-22.

(2008). . **보건복지포럼,** 144, 21-33.

, (2005).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 발전 방안 연구.** .

. http://www.socialenterprise.or.kr

(2009). . **한국로고스경영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70-80.

(2008).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유럽 경험과의 비교와 시사점.** .

(2009).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1, 79-98.

(2009). : 22 . **현대사회와 행정,** 19(3), 1-24.

(2009).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

(2010). : (SPOI). **벤처경영연구,** 13(3), 41-56.

(2010). 사회적기업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연계방안.
.
(2010). 경기도 사회적기업 발전전략 연구. .
(2008). . 복지동향, 120, 11-17.
(2006).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 추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0). . 현상과 인식, 4(3), 251-277.
, , (2010). .
한국산업경제저널, 2(2), 39-57.
(2010). .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1).
. 생협평론, 4.
(2010). . 보건복지포럼, 162, 42-56.
(2009). . 동향과전망, 75, 4-73.
(2006).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
, (2009).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3), 229-320.
(2010). DEA
: H , . 기업경영연구, 17(2), 179-192.
(2008).
. 한국비즈니스리뷰, 1(2), 43-65.
, , (2010). 유럽 사회적기업 부문: 정책과 사례.
.
, , (2008). .

사회적기업연구, 1(2), 61-89.

(2009). . **사회과학논총,** 3(1), 357-410.

, (2010). · . **도시행정학보,** 23(2), 23-54.

(2010). . **사회적기업연구,** 3(1), 91-110.

(2010). . **창조와 혁신,** 3(1), 225-248.

(2004). : · · . **사회과학논집**, 14, 31-45.

(2009). . LG Business Insight, 1039, 41-50

(2004). · . **국제노동브리프,** 2(5), 1-3.

Ascoli, U. & Costanzo, R. (2002). *The Context of New Social Policies in Europe, Dilemmas of the Welfare Mix: The New Structure of Welfare in an Era of Privatization.* Kluwer Academy/Plenum Publishers.

Defourny, J. (2001). 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 Borzaga & Defourny(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 1-28.

Defourny, J. & Nyssens, M. (2006). *Social Enterprise: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and Civil Society.* London: Routledge.

EMES Network. (1997, 1998, 1999).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A New Answer to Social Exclusion in European.* Semestrial Progress Reports to the European Commission.

Lester, M. & Salamon, S. & Wojciech, S. & Associates (2004). *Global civil society: Dimensions of the Nonprofit Sector, Volume 2.* Bloomfield, CT: Kumarian Press.

Ranci, C. (2002). *The Mixed Economy of Social Care in Europe, Dilemmas of the Welfare Mix: The New Structure of Welfare in an Era of Privatization.* Kluwer Academy/Plenum Publishers, 25-45.

Susie, P. (2008). *Anfoederungen und Wirklichkeit der "qualifizierenden Beschaeftigung" im Spannungsfeld der Arbeitslosen-und Sozialhilfepolitik.* Stuttgart. Ibidem-Verlag.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재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홍보팀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303)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2011년	11-01	u-Health		9,000
	11-02			6,000
	11-03			6,000
	11-04			5,000
	11-05			7,000
	11-06			7,000
		- -		
	11-07			6,000
	11-08			6,000
	11-09			6,000
	11-10			7,000
	11-11			7,000
	11-12	:		7,000
	11-13			5,000
	11-14			7,000
	11-15	- · ·		6,000
	비발간			
	11-16-1	: , ,		7,000
	11-16-2			6,000
	11-17-1	DB (5):		6,000
	11-17-2	- -		8,000
	11-17-3	2011		7,000
	11-17-4	2011		10,000
	11-17-5			7,000
	11-17-6			8,000
	11-17-7			5,000
	11-18			6,000
	11-19	:		7,000
	11-20			6,000
	11-21	- & -		10,000
	11-22			6,000
	11-23	-TANF -		7,000
	11-24	2011		8,000
	비발간	2011		
	비발간	2011		
	11-25	: · ·		5,000
	11-26			12,000
	11-27			10,000

	11-28			5,000
	11-29			7,000
	11-30	OECD		6,000
	11-31			8,000
	11-32	·		7,000
	11-33			5,000
	11-34			6,000
	11-35			6,000
	11-36	: 2011		11,000
	11-37-1			6,000
	11-37-2			6,000
			( )	
	11-37-3			7,000
	11-37-4			6,000
	11-37-5			8,000
			( )	
	11-37-6			7,000
	11-37-7			6,000
	11-37-8			7,000
			( )	
	11-37-9			9,000
	11-37-10	: OECD		5,000
	11-37-11			5,000
	11-37-12			8,000
	11-37-13	-		6,000
		M (1)		
	11-37-14			7,000
	11-37-15	·		8,000
	11-37-16	- · -		5,000
	11-37-17			7,000
	11-37-18	- -		8,000
	11-37-19	DB		10,000
	비발간			
	비발간			
	11-37-20			8,000
			( )	
	11-37-21			
			( )	
	비발간			
	11-37-22			
			( )	
	11-37-23			
	11-38			8,000
		-2006~2010 -		
	11-39-1			10,000
	11-39-2			11,000
	11-39-3			10,000

	11-39-4	DB		10,000
	11-40-1			9,000
	11-40-2			8,000
	11-41-1			8,000
	11-41-2	(ODA)		5,000
	11-42	· (2)		11,000
	11-43	I:		13,000
	11-44-1			16,000
	11-44-2	2011		8,000
	비발간			
	11-45	2009 (II)		7,000
	비발간			
	비발간			
	11-46	2011		7,000
	11-47	2011 (3)		6,000
■ 2010년	10-01			5,000
	10-02			5,000
	10-03			7,000
	10-04			6,000
	10-05			7,000
	10-06			7,000
	10-07			5,000
	10-08			7,000
	10-09			5,000
	10-10			5,000
	10-11			5,000
	10-12	3		8,000
	10-13			7,000
	10-14	: - 10 : -		7,000
	10-15			7,000
	10-16	2010		8,000
	10-17	OECD :		7,000
	10-18	(HTC)		8,000
	10-19			6,000
	10-20	:		8,000
	10-21			8,000
	10-22	: 5		8,000
	10-23			7,000
	10-24	:		5,000
	10-25			7,000
	10-26			7,000
	10-27	:		6,000
	10-28	: 2010		10,000
	10-29			6,000

	10-30-1			17,000
	10-30-2	: ,		5,000
	10-30-3			5,000
	10-30-4			6,000
	10-30-5			5,000
	10-30-6			6,000
	10-30-7	·	( )	6,000
	10-30-8			6,000
	10-30-9			7,000
	10-30-10			6,000
	10-30-11			10,000
	10-30-12			6,000
	10-30-13			6,000
	10-30-14	·		5,000
	10-30-15			5,000
	10-30-16	· DB		7,000
	10-30-17			6,000
	10-30-18			10,000
	10-30-19			6,000
	10-30-20	( )		5,000
	10-30-21			7,000
	10-31-1	2010		8,000
	10-31-2	2010		9,000
	10-31-3	DB (4): DB		7,000
	10-31-4			6,000
	10-31-5			6,000
	10-31-6			7,000
	10-31-7			5,000
	10-32-1-1	1		8,000
	10-32-1-2	2		11,000
	10-32-2	DB		5,000
	10-32-3			5,000
	10-33	(3)		9,000
	10-34	(1)		14,000
	10-35	(1)		10,000
	10-36	(1):		8,000
	10-37-1	2010		14,000
	10-37-2	2009 :		6,000
	10-38-1	2008 (II)		11,000
	10-38-2	2009 (I)		7,000
	10-39	(10)		7,000
	10-40	(2)		5,000